

시보

| | |
|--------|-------|
| 선 람 | 기관의 장 |
| | |

all ways INCHEON

제1823호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353호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3
- 인천광역시조례 제6354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12
- 인천광역시조례 제635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17

규 칙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8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2

훈 령

- 인천광역시 교육훈령 제156호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7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66호 도시관리계획 (석촌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67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3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69호 인천광역시 문화재(기념물) 지정 및 문화재구역 고시 4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4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72호 도시관리계획 (농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7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49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5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37호 도시계획시설(석촌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5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39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6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49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공고(안) 65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50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6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54호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 공고 6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6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7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66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7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6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8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70호 도시계획시설(검단17호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8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71호 도시계획시설(북산역사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9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7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10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7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공고 101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24호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25호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8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2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1

군·구

- 인천광역시미추홀구고시 제2020-39호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143
- 인천광역시미추홀구고시 제2020-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호선 외 3개노선, 공원: 송의소공원]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45

조 례

인천광역시 조례 제 6353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353호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2.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3.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4.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현장실습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실습의 기본방향)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교내활동,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험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 산업체 선정과 실시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수립·개발하는 경우 현장실습 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여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를 하여 수립하되,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계획에 대한 교육감의 제출 안내가 있을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9조(현장실습의 방법) ① 현장실습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생의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4. 그 밖의 현장실습

② 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한다.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가 운영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전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노동인권·산업안전 보건·직업윤리·성희롱예방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직무내용, 현장실습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실습협약의 체결) 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장,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의 안전보장)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사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취업지원센터·전문지원기관·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학생의 상담지원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현장실습의 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참여기업, 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음 학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책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 실습 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부처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표창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현장실습 기본 방향(안 제5조)
 -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과 실시 시기 등 엄격히 제한
-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7조)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제 8조)
 -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9명~ 15명
- 현장실습의 방법(안 제9조)
 - 우수기관 연계형, 산업체 체험형, 산업체 채용약정형 등
- 사전교육 (안 제11조)
 - 노동관계법·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 조례 제6354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354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 학생 및 교직원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안 제4조)
 - 개선 대책, 협력 체계 구축,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매년 공개
-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6조)
 - 담당 5급 상당 공무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
- 실태조사(안 제7조)
 -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결과 관리 계획 반영

인천광역시 조례 제6355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
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35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바로알기교육”이란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역사적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3.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인권·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기업

나. 가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역사바로알기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일본군‘위안부’ 등 교육 운영
5.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사업
3. 학생 동아리 활성화 사업

- 4. 교사 연구회 활성화 사업
- 5. 학교 식민잔재 청산 사업
- 6.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 또는 개인
 ·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 학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정책 수립, 예산 지원
-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 교원 역량 강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일본군 ‘위안부’ 등 교육
- 역사바로알기교육 사업 규정(안 제5조)
 -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학생 동아리, 교사 연구회, 학교 식민 잔재 청산 사업 등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88호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
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8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이라고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관할 각급학교 교원에게 법률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2. 교원지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단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명 이내를 단원으로 위촉하며, 당연직 단원은 교권보호 업무 담당 부서 과장급 공무원, 교권보호전담 상근변호사로 한다.

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변호사법」 등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법률상담) ① 인천광역시 관할 각급학교 교원이 제2조의 내용으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담당자는 단원 중 법률지원변호사를 지정하여 해당 교원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지정된 법률지원변호사는 지원한 결과를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료) 인천광역시 관할 각급학교 교원이 제6조에 따라 법률상담을 한 경우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관할 각급학교 교원이 제6조에 따르지 않고 법률 상담을 한 경우 그 상담료는 인천광역시 관할 각급학교 교원이 부담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된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법률지원단 업무 수행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담요청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제3조로 위촉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에게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법률 상담 등의 절차는 별도의 계획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사항 제정

2. 주요내용

- 법률지원단 기능(제2조)
 -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 상담
 - 교육활동 침해 관련 고발 사안 법률 자문 등
-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제3조): 8명 이내
 - 국장(단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변호사 6명

인천광역시 교육훈령 제156호

발 령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교육훈령 제156호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분쟁조정 신청)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았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조정 개시) ① 교육감이 제5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가 주소불명, 인적사항 제공 거부,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소속 기관장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 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분쟁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된다.

제10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간사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 | | |
|--------|-----|-----|
| 접수자 기록 | 번호 | 교권- |
| | 일자 | |
| | 접수자 | |

| | | | | | | |
|------------------------|----------|------------------------------|------|---------------|---------------|---------------------|
|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 ○○○ | 소속교 | ○○교 | 직위 | 교사 |
| | 휴대전화 | 000-0000-0000 | | | | |
| 피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 ○○○ | 소속교 | 00교 | 신분 | 학생 (학부모) |
| | 성별 | 여, 남 | 휴대전화 | 000-0000-0000 | 피해교원 과의 관계 | 담임, 교과담당 교사 등 |
| | 주소 | 인천광역시 ○○구 ○○로 100(100동 100호) | | | | |
|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심의 결과 | 개최 일자 | 2019년 ○월 ○일 | 결과 | (예시) 분쟁조정 불성립 | | |

**조정
요청 내용**

(예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이 불성립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한 번 분쟁 조정을 요청하고자 함.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 월 ○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교권보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제정

2. 주요내용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제2조): 위원장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장 호선
 - 시의원, 국장, 경력 15년이상 교원, 교수, 학부모(학교운영위원·학폭대책자치위원 경력자), 변호사, 경찰 중 위촉
- 분쟁조정 신청 (제5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분쟁 조정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66호

도시관리계획 (석촌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석촌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석촌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2), 남동구 공원녹지과(032-453-629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3. 2.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공원:석촌근린공원)
2.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
3. 면 적: 53,691.0m²
4. 도시계획시설(석촌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석촌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 15-1 일원)

| 구분 | 변경 전 | | | | | | 변경 후 | | | | | | 비고 | |
|---|------------------|-------------|-----------|-----------------|------------|--------------------|--|-------------|-----------|-----------------|------------|--------------------|-----------------|--|
|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축물 | | | 공 작 물 (기)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축물 | | | 공 작 물 (기) | | |
| | | | 동수 (동) | 바닥 면적 (㎡) | 연면적 (㎡) | | | | 동수 (동) | 바닥 면적 (㎡) | 연면적 (㎡) | | | |
| 합 계 | 53,691.0 | 7,762.0 | 1 | 850.8 | 984.1 | 77 | 53,691.0 | 5,245.0 | 1 | 816.3 | 816.3 | 42 | | |
| 공 원 시 설 | 계 | 7,762.0 | 7,762.0 | - | - | - | - | 5,245.0 | 5,245.0 | - | - | - | - | 시설면적:감)2,517.0㎡ |
| | 소 계 | 2,945.0 | 2,945.0 | - | - | - | - | 1,460.0 | 1,460.0 | - | - | - | - | 시설면적:감)1,485.0㎡ |
| | 기 반 시 설 | | | | | | | | | | | | | |
| | 도 로 | 1,218.0 | 1,218.0 | - | - | - | - | 1,108.0 | 1,108.0 | - | - | - | - | (시설면적:감)110.0㎡ |
| | 광 장 | 1,727.0 | 1,727.0 | - | - | - | - | 352.0 | 352.0 | - | - | - | - | (시설면적:감)1,375.0㎡ |
| | 조경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양시설 | 920.0 | 920.0 | - | - | - | 45 | 465.0 | 465.0 | - | - | - | 27 | 시설면적:감)455.0㎡ 공작물:감)18기 |
| | 유희시설 | 290.0 | 290.0 | - | - | - | 9 | - | - | - | - | - | - | 시설면적:감)290.0㎡ 공작물:감)9기 |
| | 운동시설 | 1,296.0 | 1,296.0 | 1 | 850.8 | 984.1 | 22 | 1,026.0 | 1,026.0 | 1 | 816.3 | 816.3 | 14 | 시설면적:감)270.0㎡ 건축물:감)34.5㎡ 공작물:감)8기 |
| | 교양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익시설 | 2,311.0 | 2,311.0 | - | - | - | - | 2,294.0 | 2,294.0 | - | - | - | - | 시설면적:감)17.0㎡ | |
| 관리시설 | - | - | - | - | - | 1 | - | - | - | - | - | 1 | - | |
| 녹지 및 기타 | 45,929.0 | - | - | - | - | - | 48,446.0 | - | - | - | - | - | 녹지면적:증)2,517.0㎡ | |
| · 기 정 : 시설율 : 14.45% · 녹지율 : 85.55% · 건폐율 : 1.58% | | | | | | | · 변 경 : 시설율 : 9.77% · 녹지율 : 90.23% · 건폐율 : 1.52% | | | | | | | |

나. 시설 조서

| 구분 | 변 경 전 | | | | | | | | | 변 경 후 | | | | | | | | | 비 고 | | | | |
|---------|-------|-----|-----------|-----------------------|-----------------------|-----|-----|----------------------|-------|--------|----------|-----|------------|-----------------------|-----------------------|----|----|----------------------|-------|--------|-------------------|------|------|
| | 시설명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m ²) | 시설면적(m ²) | 구조 | 규모 | 건축물(m ²) | | 공작물(기) | 시설명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m ²) | 시설면적(m ²) | 구조 | 규모 | 건축물(m ²) | | 공작물(기) | |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 바닥면적 | | | 연면적 | | |
| | 계 | | | 53,691.0 | 7,762.0 | - | 1동 | 850.8 | 984.1 | 77 | 계 | | | 53,691.0 | 5,245.0 | - | 1동 | 816.3 | 816.3 | 42 | - | | |
| 도로 및 광장 | 소 계 | | | 2,945.0 | 2,945.0 | - | - | - | - | - | 소 계 | | | 1,460.0 | 1,460.0 | - | - | - | - | - | 감 1,485.0㎡ | | |
| | 도로 | - | 전지역 | 1,218.0 | 1,218.0 | - | - | - | - | - | 도로 | - | 전지역 | 1,108.0 | 1,108.0 | - | - | - | - | - | 감 110.0㎡ | | |
| | 광장 | 가 | - | 1,727.0 | 1,727.0 | - | - | - | - | - | 광장 | 가 | - | 352.0 | 352.0 | - | - | - | - | - | 감 1,375.0㎡ | | |
| | 광장1 | 가-1 | 간석. 3-10잡 | (385.0) | (38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385.0㎡ | | |
| | 광장2 | 가-2 | 간석. 산4입 | (620.0) | (6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620.0㎡ | | |
| | 광장3 | 가-3 | 간석. 5-2전 | (242.0) | (242.0) | - | - | - | - | - | 광장1 | 가-1 | 간석. 5-2전 | (242.0) | (242.0) | - | - | - | - | - | - | - | |
| | 광장4 | 가-4 | 간석. 산9-2도 | (110.0) | (110.0) | - | - | - | - | - | 광장2 | 가-2 | 간석. 산9-2도 | (110.0) | (110.0) | - | - | - | - | - | - | - | |
| | 광장5 | 가-5 | 간석. 산4입 | (370.0) | (3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370.0㎡ | | |
| 휴양 시설 | 소 계 | | | 920.0 | 920.0 | - | 26㎡ | - | - | 45 | 소 계 | | | 465.0 | 465.0 | - | - | - | - | 27 | 감 455.0㎡ 감 18기 | | |
| | 휴게소 | 나 | - | 920.0 | 920.0 | - | - | - | - | - | 휴게소 | 나 | - | 465.0 | 465.0 | - | - | - | - | - | 감 455.0㎡ | | |
| | 휴게소-1 | 나-1 | 간석. 산6-4입 | (175.0) | (17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175.0㎡ | | |
| | 휴게소-2 | 나-2 | " | (185.0) | (18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185.0㎡ | | |
| | 휴게소-3 | 나-3 | 간석. 산6-4입 | (60.0) | (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60.0㎡ | | |
| | 휴게소-4 | 나-4 | 간석. 산4입 | (35.0) | (3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35.0㎡ | | |
| | 휴게소-5 | 나-5 | 간석. 산5-1입 | (330.0) | (330.0) | - | - | - | - | - | 휴게소-1 | 나-1 | 간석. 산15-1입 | (330.0) | (330.0) | - | - | - | - | - | - | - | |
| | 휴게소-6 | 나-6 | 간석. 산6-5입 | (80.0) | (80.0) | - | - | - | - | - | 휴게소-2 | 나-2 | 간석. 산6-5입 | (80.0) | (80.0) | - | - | - | - | - | - | - | |
| | 휴게소-7 | 나-7 | 간석. 산9-1입 | (55.0) | (55.0) | - | - | - | - | - | 휴게소-3 | 나-3 | 간석. 산9-1입 | (55.0) | (55.0) | - | - | - | - | - | - | - | |
| | 샤워대 | ① | 간석. 산4입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감 1기 | |
| | 샤워대 | ② | 간석. 산9-2도 | - | - | - | - | - | - | (1) | 샤워대 라 | ① | 간석. 산9-2도 | - | - | - | - | - | - | - | - | 1 | - |
| | 샤워대 | ③ | 전지역 | - | - | - | - | - | - | (5) | 샤워대 라 | ② | 간석. 5-2전 | - | - | - | - | - | - | - | - | 1 | 감 4기 |
| | 등외차 | ④ | 전지역 | - | - | - | - | - | - | (27) | 등외차 | ③ | 전지역 | - | - | - | - | - | - | - | - | 19 | 감 8기 |
| | 이외탁차 | ⑤ | " | - | - | - | - | - | - | (9) | 이외탁차 | ④ | " | - | - | - | - | - | - | - | - | 6 | 감 3기 |
| 앉음벽 | ⑥ | " | - | - | - | 26㎡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감 2기 | | |

| 구분 | 변 경 전 | | | | | | | | | 변 경 후 | | | | | | | | | 비 고 | | | |
|------------|---------|-----|-----------|-----------------------|-----------------------|----|-----|----------------------|-------|--------|---------|-----|-----------|-----------------------|-----------------------|----|-----|----------------------|-------|--------|------------------------------------|--------------------|
| | 시설명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m ²) | 시설면적(m ²) | 구조 | 규모 | 건축물(m ²) | | 공작물(기) | 시설명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m ²) | 시설면적(m ²) | 구조 | 규모 | 건축물(m ²) | | 공작물(기) |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 바닥면적 | | | 연면적 | |
| 유희 시설 | 소 계 | | | 290.0 | 290.0 | - | 25m | - | - | 9 | 소 계 | | | - | - | - | - | - | - | - | - | 감) 290.0㎡ 감) 9기 |
| | 숲속 놀이터 | 다 | 간석. 3-10잡 | 220.0 | 2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220.0㎡ |
| | 유아 놀이터 | 라 | “ | 70.0 | 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70.0㎡ |
| | 조합 놀이대 | ㉗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감) 1기 |
| | 흔들말 | ㉘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감) 4기 |
| | 놀이가벽 | ㉙ | “ | - | - | - | 25m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감) 4기 |
| 운동 시설 | 소 계 | | | 1,266.0 | 1,266.0 | - | - | 1,850.8 | 984.1 | 22 | 소 계 | | | 1,026.0 | 1,026.0 | - | - | 1,816.3 | 816.3 | 14 | 감) 270.0㎡ 감) 345㎡(건축물) 감) 8기 | |
| | 다목적체육관 | 마 | 간석.5답 | 911.0 | 911.0 | - | - | 1,850.8 | 984.1 | - | 다목적체육관 | 1 | 간석.5답 | 816.0 | 816.0 | - | - | 1,816.3 | 816.3 | - | 감) 95.0㎡ 감) 345㎡(건축물) | |
| | 체력단련장 | 바 | - | 385.0 | 385.0 | - | - | - | - | - | 체력단련장 | 다 | - | 210.0 | 210.0 | - | - | - | - | - | 감) 175.0㎡ | |
| | 체력단련장 | 바-1 | 간석. 산6-5입 | (210.0) | (210.0) | - | - | - | - | - | 체력단련장 | 다-1 | 간석. 산6-5입 | (210.0) | (210.0) | - | - | - | - | - | - | - |
| | 체력단련장 | 바-2 | 간석. 산6-4입 | (120.0) | (1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120.0㎡ |
| | 체력단련장 | 바-3 | 간석.산4입 | (55.0) | (5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55.0㎡ |
| | 체력단련 기구 | ㉚ | 전지역 | - | - | - | - | - | - | (22) | 체력단련 기구 | ㉛ | 전지역 | - | - | - | - | - | - | - | 14 | 감) 8기 |
| 편의 시설 | 소 계 | | | 2,311.0 | 2,311.0 | - | - | - | - | - | 소 계 | | | 2,294.0 | 2,294.0 | - | 59면 | - | - | - | 감) 17.0㎡ | |
| | 주차장 | 사 | 간석.5답 | 2311.0 | 2311.0 | - | 62면 | - | - | - | 주차장 | 라 | 간석.5답 | 2,294.0 | 2,294.0 | - | 59면 | - | - | - | - | - |
| 관리 시설 | 소 계 | | | - | - | - | - | - | - | 1 | 소 계 | | | - | - | - | - | - | - | - | 1 | - |
| | 중합안내판 | ㉜ | “ | - | - | - | - | - | - | (1) | 중합안내판 | ㉝ | 간석. 5-2전 | - | - | - | - | - | - | - | (1) | - |
| 녹지 및 기타 시설 | 소 계 | | | 45,929.0 | - | - | - | - | - | - | 소 계 | | | 48,446.0 | - | - | - | - | - | - | - | 증) 2,517.0㎡ |
| | 녹지 | - | 전지역 | 45,929.0 | - | - | - | - | - | - | 녹지 | - | 전지역 | 48,446.0 | - | - | - | - | - | - | - | 증) 2,517.0㎡ |

다. 도로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면적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
| | | | | (m) | (m) | (㎡) | | | | |
| 기정 | 총계 | | | | 915.0 | 1,218.0 | - | - | - | (감)110.0㎡ |
| 변경 | | | | | 800.0 | 1,108.0 | - | - | - | |
| 기정 | 소로 | 3 | 1 | 2.0 | 130.0 | 260.0 | 진입로 | 부지외곽 | 부지외곽 | (감)260.0㎡ |
| 변경 | - | - | - | - | - |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2 | 2.0 | 10.0 | 20.0 | 진입로 | 부지외곽 | 소로3-1 | (감)20.0㎡ |
| 변경 | - | - | - | - | - |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3 | 2.0 | 10.0 | 20.0 | 진입로 | 부지외곽 | 소로3-1 | (감)20.0㎡ |
| 변경 | - | - | - | - | - | - | - | - | - | |
| 신설 | 소로 | 3 | 1 | 2.0 | 185.0 | 370.0 | 진입로 | 부지외곽 | 부지외곽 | (증)370.0㎡ |
| 기정 | 산책로 | - | 1 | 1.2 | 360.0 | 432.0 | 산책로 | 가-2. 광장2 | 가-4. 광장4 | (증)36.0㎡ |
| 변경 | 산책로 | - | 1 | 1.2 | 390.0 | 468.0 | 산책로 | 소로3-1 | 가-2. 광장2 | |
| 기정 | 산책로 | - | 2 | 1.2 | 180.0 | 216.0 | 산책로 | 소로3-1 | 산책로1 | (감)216.0㎡ |
| 변경 | 산책로 | - | - | - | - | - | - | - | - | |
| 기정 | 산책로 | - | 3 | 1.2 | 110.0 | 132.0 | 산책로 | 사. 주차장 | 바-1. 체력단련장1 | - |
| 변경 | 산책로 | - | 2 | 1.2 | 110.0 | 132.0 | 산책로 | 소로3-1 | 다-1. 체력단련장1 | |
| 기정 | 산책로 | - | 4 | 1.2 | 105.0 | 126.0 | 산책로 | 가-3.광장3 | 산책로3 | - |
| 변경 | 산책로 | - | 3 | 1.2 | 105.0 | 126.0 | 산책로 | 가-1.광장1 | 산책로2 | |
| 기정 | 산책로 | - | 5 | 1.2 | 10.0 | 12.0 | 연결로 | 산책로1 | 나-6.휴게소6 | - |
| 변경 | 산책로 | - | 4 | 1.2 | 10.0 | 12.0 | 연결로 | 산책로1 | 나-2.휴게소2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67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 3. 2.

인 천 광 역 시 장

1.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요지

본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법에 따른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임

2. 열람장소

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2)

나. 군·구 담당부서

| 열람장소 | | 전화번호 | 비고 |
|------|---------|--------------|----|
| 중구 | 도시항만재생과 | 032-760-7651 | |
| 동구 | 건축과 | 032-770-6791 | |
| | 도시정비과 | 032-770-6681 | |
| 미추홀구 | 도시정비과 | 032-880-7331 | |
| 연수구 | 건축과 | 032-749-8611 | |
| 남동구 | 공동주택과 | 032-453-6421 | |
| | 도시재생과 | 032-453-8391 | |
| 부평구 | 건축과 | 032-509-6881 | |
| | 도시개발과 | 032-509-6901 | |
| 계양구 | 건축과 | 032-450-6792 | |
| 서구 | 주택과 | 032-560-4731 | |
| | 도시재생경관과 | 032-560-4591 | |
| 강화군 | 도시개발과 | 032-930-3846 | |

다. 본 기본계획 도서는 열람장소(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69호

인천광역시 문화재(기념물) 지정 및 문화재구역 고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기념물)를 신규지정하고 그에 따른 문화재구역을 지정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2.

인천광역시장

가. 고시내용

- 종류 및 지정번호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
- 문화재 명칭 :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
(迎日鄭氏 判決事公派·承旨公派 東春墓域)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 68 (동춘동)
- 소유자 : 영일정씨 판결사공·승지공파 종중
- 문화재 지정사항

| 종류 및 지정번호 | 문화재명 | 수 량 | 소유자(관리자) |
|-------------------|--|------------------------------------|-------------------|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 |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 (迎日鄭氏 判決事公派· 承旨公派 東春墓域) | 묘역 20,737㎡ - 분묘 17기 - 석물 66점 | 영일정씨 판결사공·승지공파 종중 |

○ 문화재구역 지정현황

(단위 : m²)

| 문화재명 | 지 번 | 지적 | 문화재 구역 면적 | 비고 |
|--|-----------------------|--------|-----------|----|
|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 (迎日鄭氏 判決事公派· 承旨公派 東春墓域)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2-11번지 | 19,086 | 343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77번지 | 18,410 | 18,410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3번지 | 23,802 | 1,984 | |
| 합 계 | | | 20,737 | |

※ 문화재구역 현황도면 : 별첨

나. 지정사유

- 영일 정씨는 1607년 정제의 묘소를 조성한 후 400여 년 동안 인천에서 세거한 사대부 가문으로 영일 정씨 가문의 역사를 통하여 조선 중·후기 역사의 흐름을 알게 해 줌.
- 묘비석을 비롯한 석물 66점을 통하여 복두공복에서 금관조복으로 변화하는 문인석 등으로 조선 후기 미술사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으며, 종종 소유의 교지, 화회문기, 완문, 소지 등 고문서를 이용하여 조선의 정치와 사회 경제 상황 등을 살필 수 있음.
- 현재 묘역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등산로 옆인 관계로 접근이 쉬워 훼손의 우려가 있고, 근래에 들어 능묘조각과 함께 능 앞을 지키고 있는 석수, 향로석, 장명등, 혼유석과 같은 석물들도 도난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하여 도난방지와 함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다. 관리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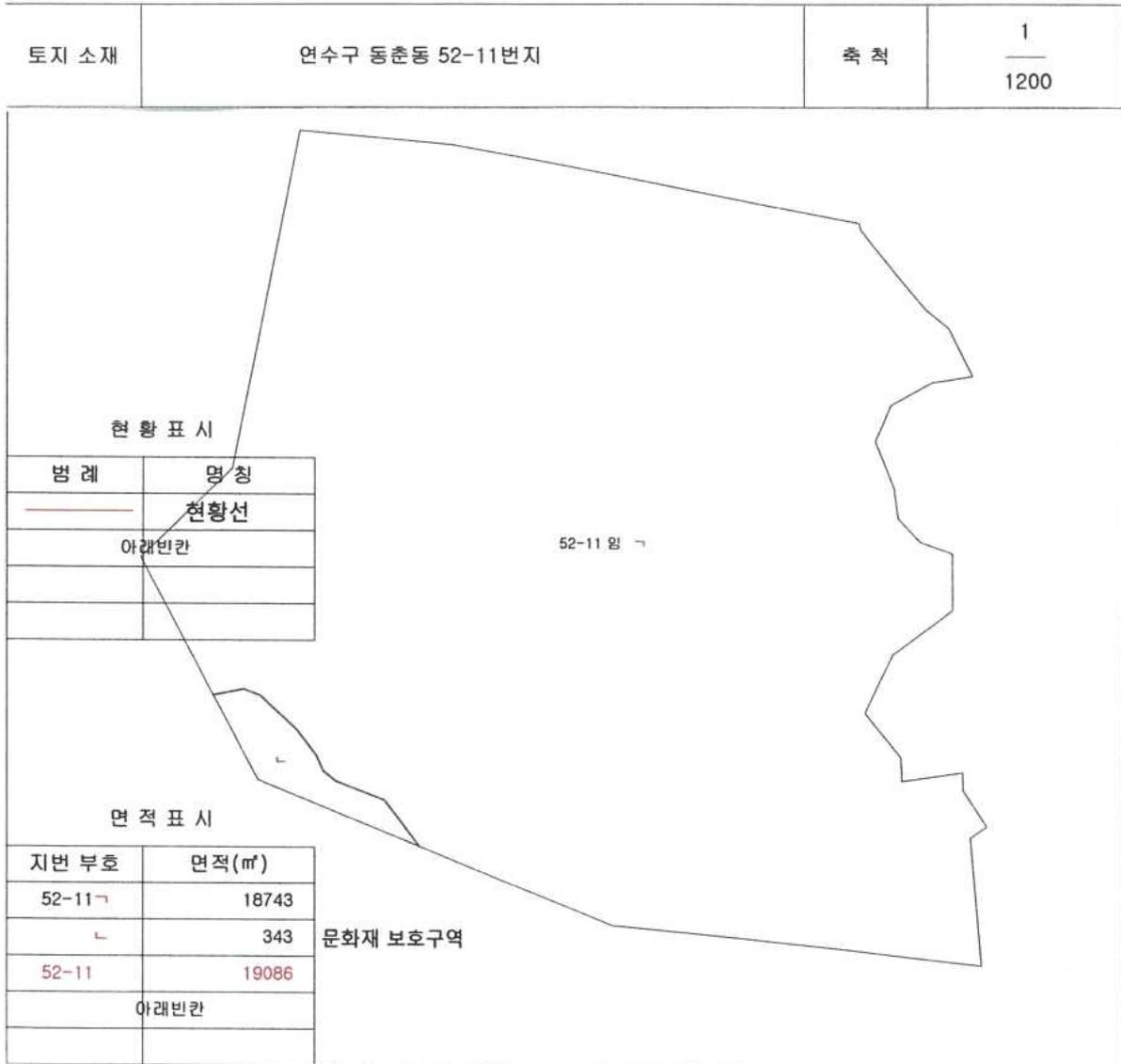
- 영일정씨 판결사공승지공파 종중 / 연수구청

라. 지정일자 : 2020.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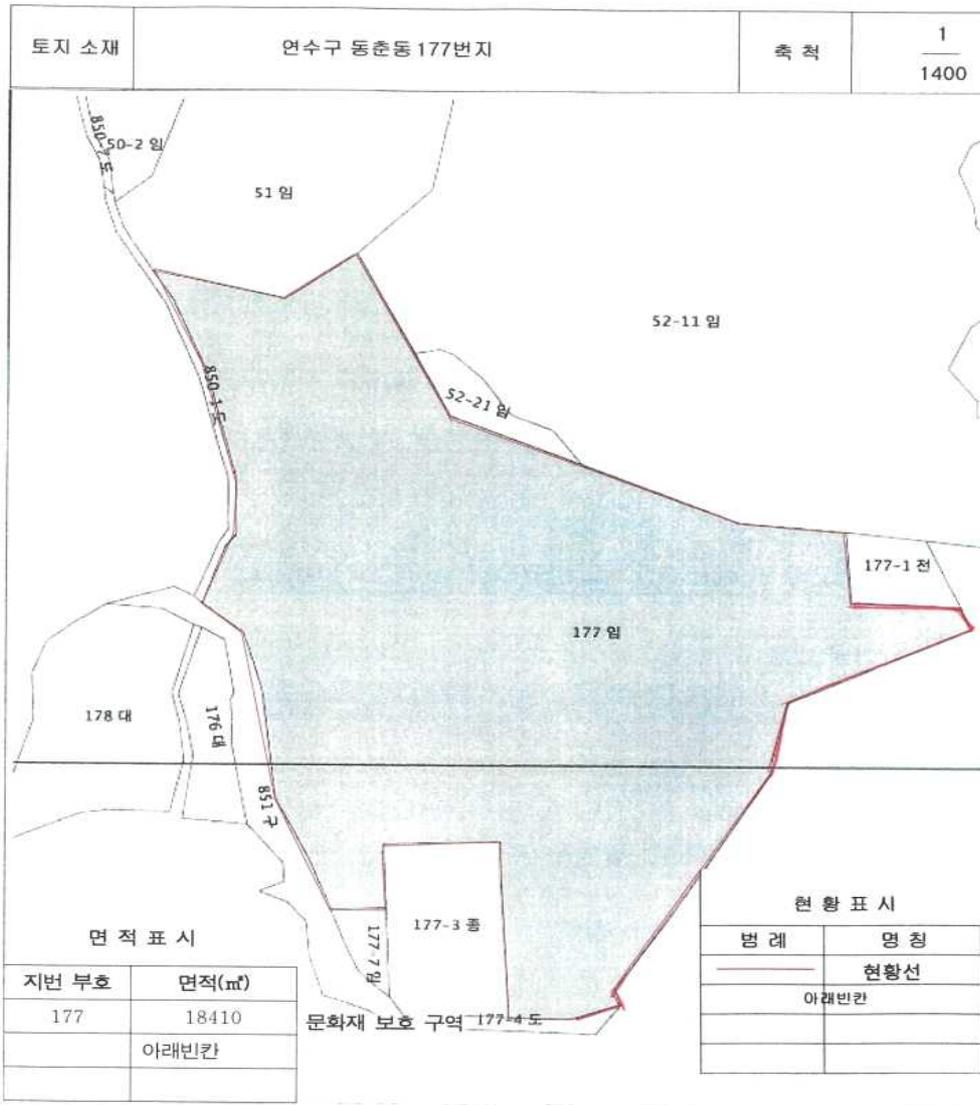
마.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주 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 연락처 : 전화 032-440-4032, 팩스 032-440-8693

동춘묘역 문화재구역 현황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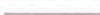
동춘묘역 문화재구역 현황도면



동춘묘역 문화재구역 현황도면

| | | | |
|-------|--------------|----|------------------|
| 토지 소재 | 연수구 동춘동 산3번지 | 축척 | $\frac{1}{6000}$ |
|-------|--------------|----|------------------|

현황 표시

| 범례 | 명칭 |
|---|------|
|  | 현황선 |
|  | 아래빈칸 |
| | |
| | |



면적 표시

| 지번 부호 | 면적(㎡) | |
|-------|-------|-----------|
| 산3ㄱ | 21818 | |
| 산3ㄴ | 1984 | 문화재 보호 구역 |
| 산3 | 23802 | |
| 아래빈칸 | | |
|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0. 3. 2.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산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 칭: 검단16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 137,800㎡(공원부지 98,250㎡, 비공원부지 39,55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 소 | 비고 |
|---|--|----|
|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
| 검단16파크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김학열 공동대표이사 이창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0번길 5-4, 2층(만수동, 정아빌딩) | |

5.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시행자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72호

도시관리계획 (농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농원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농원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2), 연수구 공원녹지과(032-749-872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3. 2.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공원:농원근린공원)
2.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 동춘동 199번지 일원
3. 면 적: 44,797m²
4. 도시계획시설(농원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농원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99 일원)

| 구 분 | 변 경 전 | | | | | | 변 경 후 | | | | | | 비 고 | | |
|---------------------|--------------------------------|-------------------|-------------------|------------------|----------------|--------------------|------------------------------|-------------|-----------|-----------------|----------------|--------------------|---------------|----------|----------|
|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 | 공 작 물 (기)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 | 공 작 물 (기) | | | |
| | | | 동수 (동) | 바닥 면적 (㎡) | 연 면적 (㎡) | | | | 동수 (동) | 바닥 면적 (㎡) | 연 면적 (㎡) | | | | |
| 계 | 46,291 | 10,674 (1,972) | 3 | 433 | 433 | 78 | 44,797 | 12,947 | 4 | 625 | 625 | 136 | 시설율: 28.8% | | |
| 공 원 시 설 | 시 설 계 | 12,646 | 10,674 (1,972) | 3 | 433 | 433 | 78 | 12,947 | 12,947 | 4 | 625 | 625 | 136 | 증) 2,273 | |
| | 기 반 시 설 | 소계 | 6,092 | 4,120 (1,972) | - | - | - | - | 5,162 | 5,162 | - | - | - | - | 증) 1,042 |
| | | 도로 | 6,092 | 4,120 (1,972) | - | - | - | - | 4,705 | 4,705 | - | - | - | - | 증) 585 |
| | | 광장 | - | - | - | - | - | - | 457 | 457 | - | - | - | - | 증) 457 |
| | 조경시설 | 1,423 | 1,423 | - | - | - | 6 | 1,205 | 1,205 | - | - | - | 2 | 감) 218 | |
| | 휴양시설 | 1,837 | 1,837 | 1 | 53 | 53 | 28 | 1,320 | 1,320 | - | - | - | 63 | 감) 517 | |
| | 유희시설 | 155 | 155 | - | - | - | 2 | 1,075 | 1,075 | - | - | - | 7 | 증) 920 | |
| | 운동시설 | 365 | 365 | - | - | - | 17 | 990 | 990 | - | - | - | 2 | 증) 625 | |
| | 교양시설 | - | - | - | - | - | - | 2,950 | 2,950 | 4 | 625 | 625 | - | 증) 2,950 | |
| | 편익시설 | 834 | 834 | 1 | 50 | 50 | - | 245 | 245 | - | - | - | - | 감) 587 | |
| | 관리시설 | 1,940 | 1,940 | 1 | 330 | 330 | 25 | - | - | - | - | - | 62 | 감) 1,940 | |
| | 기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녹지 / 기타 | 33,645 | - | - | - | - | - | 31,850 | - | - | - | - | - | 감) 1,795 | |
| 시설율(% (법정40% 이하) | 시설율 : 23.06% • 녹지율 : 72.68% | | | | | | 시설율 : 28.8% • 녹지율 : 71.2% | | | | | | | | |

나. 시설조서

| 구 분 | 시설명 | 변 경 전 | | | | | | | 변 경 후 | | | | | | | 비고 |
|------------------|----------|-------|-----------------|-------------------|---------------|------------------------------|--------------------|--------------------|-------|-----------------|-----------------|---------------|------------------------------|--------------------|--------------------|----------|
| | | 부호 | 부지 면적 (㎡) | 시설 면적 (㎡) | 건 축 물 | | | 공 작 물 (기) | 부호 | 부지 면적 (㎡) | 시설 면적 (㎡) | 건 축 물 | | | 공 작 물 (기) | |
| | | | | | 동 수 (동) | 바 다 크 면 적 (㎡) | 연 면 적 (㎡) | | | | | 동 수 (동) | 바 다 크 면 적 (㎡) | 연 면 적 (㎡) | | |
| 합 계 | | | 46,291 | 10,674 (1,972) | 3동 | 433 | 433 | 78 | | 44,797 | 12,947 | 4동 | 625 | 625 | 136 | 증) 2,273 |
| 기 반 시 설 | 계 | | 6,092 | 4,120 (1,972) | - | - | - | - | | 5,162 | 5,162 | - | - | - | - | 증) 1,042 |
| | 도로 | | 6,092 | 4,120 (1,972) | - | - | - | - | | 4,705 | 4,705 | - | - | - | - | |
| | 광장 | | - | - | - | - | - | - | 가 | 457 | 457 | - | - | - | - | |
| | 광장1 | | - | - | - | - | - | - | 가-1 | (310) | (310) | - | - | - | - | |
| | 광장2 | | - | - | - | - | - | - | 가-2 | (62) | (62) | - | - | - | - | |
| | 광장3 | | - | - | - | - | - | - | 가-3 | (85) | (85) | - | - | - | - | |
| 조 경 시 설 | 계 | | 1,423 | 1,423 | - | - | - | 6 | | 1,205 | 1,205 | - | - | - | 2 | 감) 238 |
| | 잔디밭 | 가 | 883 | 883 | - | - | - | - | | - | - | - | - | - | - | |
| | 화단 | 나 | 540 | 540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수대 | ①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연못 | | - | - | - | - | - | - | 나 | 360 | 360 | - | - | - | - | |
| | 잔디마당 | | - | - | - | - | - | - | 다 | 310 | 310 | - | - | - | - | |
| | 관목원 | | - | - | - | - | - | - | 라 | 365 | 365 | - | - | - | - | |
| | 옹달샘 | | - | - | - | - | - | - | 마 | 170 | 170 | - | - | - | - | |
| 플랜터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2) | | |
| 휴 양 시 설 | 계 | | 1,837 | 1,837 | 1동 | 53 | 53 | 28 | | 1,320 | 1,320 | - | - | - | 63 | 감) 547 |
| | 휴게소 | 다 | 1,302 | 1,302 | - | - | - | - | | - | - | - | - | - | - | |
| | 휴게소-1 | 다-1 | (250) |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휴게소-2 | 다-2 | (93) | (93) | - | - | - | - | | - | - | - | - | - | - | |
| | 휴게소-3 | 다-3 | (76) | (76) | - | - | - | - | | - | - | - | - | - | - | |
| | 휴게소-4 | 다-4 | (783) | (783) | - | - | - | - | | - | - | - | - | - | - | |
| | 휴게소-5 | 다-5 | (100)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로당 | 라 | 535 | 535 | 1동 | 53 | 53 | - | | - | - | - | - | - | - | |
| | 커뮤니티쉼터 | | - | - | - | - | - | - | 바 | 350 | 350 | - | - | - | - | |
| | 커뮤니티하우스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1) | |
| | 풍욕장 | | - | - | - | - | - | - | 사 | 200 | 200 | - | - | - | - | |
| | 풍욕의자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9) | |
| | 조경휴게소 | | - | - | - | - | - | - | 아 | 250 | 250 | - | - | - | - | |
| | 쉼터 | | - | - | - | - | - | - | 자 | 520 | 520 | - | - | - | - | |
| | 쉼터-1 | | - | - | - | - | - | - | 자-1 | (80) | (80) | - | - | - | - | |
| | 파고라 | ③ | - | - | - | - | - | (7) | ④ | - | - | - | - | - | (8) | |
| 평의자 | | - | - | - | - | - | - | ⑤ | - | - | - | - | - | (24) | 파고라 하부 | |
| 등의자 | ④ | - | - | - | - | - | (17) | ⑥ | - | - | - | - | - | (10) | | |

| 구 분 | 시설명 | 변 경 전 | | | | | | | 변 경 후 | | | | | | | 비고 |
|----------------|------------------|-------|-----------------|-----------------|-----------|-------------------------|--------------------|------------|-------|-----------------|-----------------|-----------|-------------------------|--------------------|------------|----------|
| | | 부호 | 부지 면적 (㎡) | 시설 면적 (㎡) | 건 축 물 | | | 공작물 (기) | 부호 | 부지 면적 (㎡) | 시설 면적 (㎡) | 건 축 물 | | | 공작물 (기) | |
| | | | | | 동 수(동) | 바 다 면 적 (㎡) | 연 면 적 (㎡) | | | | | 동 수(동) | 바 다 면 적 (㎡) | 연 면 적 (㎡) | | |
| | 쉼터-2 | | - | - | - | - | - | - | 자-2 | (170) | (170) | - | - | - | - | |
| 휴양 시설 | 연식의자 | | - | - | - | - | - | - | ㉗ | - | - | - | - | - | (10) | |
| | 쉼터-3 | | - | - | - | - | - | - | 자-3 | (270) | (270) | - | - | - | - | |
| | 계단식의자 | ㉘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평상 | ㉙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육각정자 | | - | - | - | - | - | - | ㉚ | - | - | - | - | - | (1) | |
| 유희 시설 | 계 | | 155 | 155 | - | - | - | 2 | | 1,075 | 1,075 | - | - | - | 7 | 증) 895 |
| | 어린이놀이터 | 마 | 155 | 155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연놀이터 | | - | - | - | - | - | - | 차 | 785 | 785 | - | - | - | - | |
| | 미끄럼대 | | - | - | - | - | - | - | ㉛ | - | - | - | - | - | (4) | |
| | 그물오르기 | | - | - | - | - | - | - | ㉜ | - | - | - | - | - | (2) | |
| | 지형놀이터 | | - | - | - | - | - | - | 카 | 290 | 290 | - | - | - | - | |
| | 오르고넘기 | | - | - | - | - | - | - | ㉝ | - | - | - | - | - | (1) | |
| | 그네 | ㉞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나무징검다리 | ㉟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운동 시설 | 계 | | 365 | 365 | - | - | - | 17 | | 990 | 990 | - | - | - | 20 | 증) 595 |
| | 체력단련장 | 바 | 365 | 365 | - | - | - | - | 타 | 890 | 890 | - | - | - | - | |
| | 체력단련장-1 | 바-1 | (171) | (171) | - | - | - | - | 타-1 | (310) | (310) | - | - | - | - | |
| | 체력단련장-2 | 바-2 | (79) | (79) | - | - | - | - | 타-2 | (90) | (90) | - | - | - | - | |
| | 체력단련장-3 | 바-3 | (115) | (115) | - | - | - | - | 타-3 | (230) | (230) | - | - | - | - | |
| | 체력단련장-4 | | - | - | - | - | - | - | 타-4 | (180) | (180) | - | - | - | - | |
| | 체력단련장-5 | | - | - | - | - | - | - | 타-5 | (80) | (80) | - | - | - | - | |
| | 건강쉼터 | | - | - | - | - | - | - | 과 | 100 | 100 | - | - | - | - | |
| 체력단련시설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20) | | |
| 교양 시설 | 계 | | - | - | - | - | - | - | | 2,950 | 2,950 | 4동 | 625 | 625 | - | 증) 2,950 |
| | 문화체험관 | | - | - | - | - | - | - | 1 | 840 | 840 | 2동 | 262 | 262 | - | |
| | 문화전시관 | | - | - | - | - | - | - | 2 | 840 | 840 | 1동 | 195 | 195 | - | |
| | 문화프로그램관 | | - | - | - | - | - | - | 3 | 1,270 | 1,270 | 1동 | 168 | 168 | - | |
| 편익 시설 | 계 | | 834 | 834 | 1동 | 50 | 50 | - | | 245 | 245 | - | - | - | - | 감) 587 |
| | 주차장 | 사 | 784 | 784 | 36대 | - | - | - | 하 | 245 | 245 | - | - | - | - | 8대 |
| | 화장실 | 아 | 50 | 50 | 1동 | 50 | 50 | - | | - | - | - | - | - | - | |
| 공원 관리 시설 | 계 | | 1,940 | 1,940 | 1동 | 330 | 330 | 25 | | - | - | - | - | - | 62 | 감) 1,940 |
| | 관리사무소 (숲속체험관) | 자 | 1,940 | 1,940 | 1동 | 330 | 330 | - | | - | - | - | - | - | - | |
| | 가로등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
| | 수목 보호울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우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중합안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구 분 | 시설명 | 변 경 전 | | | | | | | 변 경 후 | | | | | | | 비고 |
|----------------|------|-------|-------------|-------------|-----------|-----------------|----------------|------------|-------|-------------|-------------|-----------|-----------------|----------------|------------|----------|
| | | 부호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 | 공작물 (기) | 부호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 | 공작물 (기) | |
| | | | | | 동수 (동) | 바닥 면적 (㎡) | 연 면적 (㎡) | | | | | 동수 (동) | 바닥 면적 (㎡) | 연 면적 (㎡) | | |
| 공원 관리 시설 | 볼라드 | | - | - | - | - | - | - | ⑯ | - | - | - | - | - | (2) | |
| | 공원등 | | - | - | - | - | - | - | ⑰ | - | - | - | - | - | (42) | |
| | CCTV | | - | - | - | - | - | - | ⑱ | - | - | - | - | - | (12) | |
| 녹지 및 기타 | | | 33,645 | - | - | - | - | - | | 31,850 | - | - | - | - | - | 감) 1,795 |

다. 도로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연장(m) | 면적(㎡)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
|----------|-----|----|----|-----------|---------|---------|-------|-------|-------|-------------|------|
| 당초 변경 | 합계 | | | | (1,736) | (4,120) | | | | | |
| | | | | | 1,852 | 4,705 | | | | | |
| 당초 | 광로 | 계 | | | (39) | (1,972) | | | | | |
| 변경 | | | 1 | 50.0 | (39) | (1,972) | 연결로 | 도로 | 도로 | | |
| 당초 | 소로 | 계 | | | (170) | (848) | | | | | |
| 변경 | | | 1 | 50.0 | (39) | (1,972) | 연결로 | 도로 | 도로 | 중복결정 | |
| 당초 | 산책로 | 계 | | | (170) | (848) | | | | | |
| 신설 | | | 2 | 1 | 8.0 | (92) | (322) | 연결로 | 외부도로 | 광로1 | 중복결정 |
| 당초 | | | 3 | 1 | 4.0 | (92) | (368) | 연결로 | 도로 | 도로 | |
| 변경 | | | 3 | 1 | 5.5 | 39 | 230 | 진입로 | 외부도로 | 소3-3 | |
| 당초 | | | 3 | 2 | 5.0 | (33) | (165) | 진입로 | 도로 | 산책로-1 | |
| 변경 | | | 3 | 2 | 4.0 | 230 | 940 | 연결로 | 소3-1 | 문화프로그 램관 | |
| 당초 | | | 3 | 3 | 7.0 | (45) | (315) | 진입로 | 공원입구 | 산책로-18 | |
| 변경 | | | 3 | 3 | 4.0 | 117 | 510 | 연결로 | 관목원 | 소3-2 | |
| 당초 | 산책로 | 계 | | | (1,527) | (3,272) | | | | | |
| 신설 | | | 3 | 4 | 4.0 | 9 | 45 | 연결로 | 소3-3 | 문화전시관 | |
| 당초 | | | 1 | 2.0 | (124) | (248) | 진입로 | 기존등산로 | 기존등산로 | | |
| 변경 | | | 1 | 3.0 | 75 | 240 | 진입로 | 외부도로 | 소3-2 | | |
| 당초 | | | 2 | 2.0 | (6) | (12) | 연결로 | 산책로1 | 기존등산로 | | |
| 변경 | | | 2 | 2.0 | 80 | 165 | 진입로 | 기존등산로 | 광장-3 | | |
| 당초 | 산책로 | 계 | | | (20) | (30) | | | | | |
| 변경 | | | 3 | 1.5 | (20) | 34 | 진입로 | 공원입구 | 소로3-2 | | |
| 당초 | 산책로 | 계 | | | (59) | (118) | | | | | |
| 변경 | | | 4 | 1.5 | 30 | 45 | 진입로 | 외부도로 | 산책로2 | | |
| 당초 | 산책로 | 계 | | | (59) | (118) | | | | | |
| 변경 | | | 4 | 1.5 | 30 | 45 | 연결로 | 소로3-2 | 산책로1 | | |
| 당초 | 산책로 | 계 | | | (59) | (118) | | | | | |
| 변경 | | | 4 | 1.5 | 30 | 45 | 진입로 | 기존등산로 | 산책로20 |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연장(m) | 면적(m ²)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
| 당초 변경 | | | 5 5 | 2.0 2.0 | (35) 52 | (70) 110 | 연결로 진입로 | 소로3-1 외부도로 | 산책로1 광장-1 | |
| 당초 변경 | | | 6 6 | 1.0 2.0 | (26) 30 | (26) 62 | 진입로 진입로 | 공원입구 외부도로 | 소로31 산책로1 | |
| 당초 변경 | | | 7 7 | 2.0 1.5~2.0 | (65) 90 | (130) 165 | 진입로 진입로 | 공원입구 기존등산로 | 공원입구 소3-3 | |
| 당초 변경 | | | 8 8 | 2.0 2.0 | (440) 95 | (880) 192 | 연결로 진입로 | 산책로7 기존등산로 | 기존등산로 외부도로 | |
| 당초 변경 | | | 9 9 | 2.0 2.0 | (75) 48 | (150) 72 | 연결로 진입로 | 산책로7 기존등산로 | 산책로8 소로3-2 | |
| 당초 변경 | | | 10 10 | 2.0 3.0 | (34) 7 | (68) 25 | 연결로 연결로 | 산책로9 소3-2 | 산책로8 산책로1 | |
| 당초 변경 | 산책로 | | 11 11 | 2.0 3.0 | (56) 155 | (112) 473 | 진입로 연결로 | 산책로8 산책로1 | 기존등산로 광장-1 | |
| 당초 변경 | | | 12 12 | 2.0 2.0 | (43) 68 | (86) 136 | 진입로 연결로 | 공원입구 산책로6 | 산책로-8 소3-2 | |
| 당초 변경 | | | 13 13 | 3.0 2.0 | (105) 60 | (315) 120 | 연결로 연결로 | 산책로8 산책로7 | 산책로8 옹달샘 | |
| 당초 변경 | | | 14 14 | 2.0 2.0 | (24) 90 | (48) 190 | 진입로 연결로 | 경로당 산책로8 | 산책로13 산책로7 | |
| 당초 변경 | | | 15 15 | 2.0 2.0 | (22) 50 | (44) 110 | 연결로 연결로 | 소로3-3 산책로7 | 산책로13 산책로14 | |
| 당초 변경 | | | 16 16 | 2.0 2.0 | (26) 85 | (52) 175 | 진입로 연결로 | 소로3-3 산책로11 | 공원입구 산책로17 | |
| 당초 변경 | | | 17 17 | 2.0 2.0 | (55) 75 | (110) 150 | 연결로 연결로 | 소로3-3 신책로16 | 산책로18 산책로5 | |
| 당초 변경 | | | 18 18 | 3.0 2.0 | (82) 10 | (246) 20 | 연결로 연결로 | 산책로-8 산책로11 | 산책로20 산책로16 | |
| 당초 변경 | | | 19 19 | 3.0 2.0 | (67) 25 | (201) 50 | 연결로 연결로 | 산책로8 산책로20 | 산책로20 광장-2 | |
| 당초 변경 | | | 20 20 | 2.0 1.5 | (58) 105 | (116) 157 | 연결로 연결로 | 산책로18 산책로2 | 산책로21 건강쉼터 | |
| 당초 변경 | | | 21 21 | 2.0 1.5 | (105) 32 | (210) 50 | 진입로 연결로 | 공원입구 산책로2 | 기존등산로 산책로20 | |
| 신설 | | | 22 | 1.5 | 80 | 120 | 연결로 | 소3-2 | 소3-3 | |
| 신설 | | | 23 | 1.5 | 3 | 6 | 연결로 | 자연놀이터 | 연못 | |
| 신설 | | | 24 | 1.5 | 26 | 39 | 연결로 | 산책로22 | 소로3-3 | |
| 신설 | | | 25 | 1.5 | 24 | 36 | 연결로 | 소로3-3 | 옹달샘 | |
| 신설 | | | 26 | 1.0 | 28 | 28 | 연결로 | 산책로8 | 산책로15 | |
| 신설 | | | 27 | 1.0 | 10 | 10 | 연결로 | 소3-2 | 산책로12 | |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49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

인천광역시장

1. 등록 및 폐기사유 :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문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2. 최초사용연월일 : 2020. 2. 26.
3. 폐기연월일 : 2020. 2. 26.
4.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불임 참고

등록 공인명 및 인영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위
원회위원장인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
원회위원장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37호

도시계획시설(석촌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석촌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공원녹지과 ☎ 032-453-6292)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 3. 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 2) 명 칭 :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 구분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면적 (㎡) | 금회실시계획인 가면적(㎡) |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 최 초 결정일 |
|----|------------|------------|-----------|-------------------|-------------------|---------------------------|
| 최초 | 석촌 근린공원 | 도시 공원 | 53,691 | 53,691 | - | 1966.08.31. (건고 2701호)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별첨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붙임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각 1부

□ 토지조사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현실적 이용상황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용도지역 및 지구 | 소유자 |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 성명 | 송달주소 | 지분 | 성명 | 주소 | 권리종류 | |
| | | | | | 57,331 | 53,691 | | | | | | | | |
| 1 | 간석동 | 3-10 | 잡 | 녹지 | 2,627 | 2,627 | 보전녹지 근린공원 | 이○준 | 부평구 경인로 ○ | 1/4 | | | | |
| | | | | | | | | 나○자 | 부평구 경인로 ○ | 1/4 | | | | |
| | | | | | | | | 이○형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 | 1/4 | | | | |
| | | | | | | | | 이○형 | 인천 서구 고산로 ○ | 1/4 | | | | |
| 2 | 간석동 | 3-19 | 도 | 법면 | 146 | 135 | 보전녹지 근린공원 | 국(국토 교통부) | | | | | | |
| 3 | 간석동 | 5 | 답 | 주차장 | 2,230 | 2,155 | 보전녹지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 남동구 정각로 29 | | | | | |
| 4 | 간석동 | 5-1 | 전 | 주차장 | 893 | 572 | 보전녹지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 남동구 정각로 29 | | | | | |
| 5 | 간석동 | 5-2 | 전 | 주차장 | 739 | 571 | 보전녹지 근린공원 도로 | 인천광역시 | 남동구 정각로 29 | 611/803 | | | | |
| | | | | | | | | 남동구 | 남동구 소래로 633 | 192/803 | | | | |
| 6 | 간석동 | 5-4 | 답 | 관리 시설 | 100 | 100 | 보전녹지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 남동구 정각로 29 | | | | | |
| 7 | 간석동 | 5-6 | 도 | 도로 | 70 | 2 | 보전녹지 근린공원 도로 | 남동구 | 남동구 소래로 633 | | | | | |
| 8 | 간석동 | 5-7 | 임 | 녹지 | 525 | 525 | 보전녹지 근린공원 | 김○곤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55번길 ○ | | | | | |
| 9 | 간석동 | 산3-3 | 임 | 임야 | 1,190 | 1,190 | 보전녹지 근린공원 | 이○준 | 부평구 경인로 ○ | | | | | |
| 10 | 간석동 | 산4 | 임 | 임야 | 5,026 | 5,026 | 보전녹지 근린공원 | 방○영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 | 1.747/14 | | | | |
| | | | | | | | | 김○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 | 1.750/14 | | | | |
| | | | | | | | | 남동구 | 남동구 소래로 633 | 1.767/14 | | | | |
| | | | | | | | | 방○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 | 0.873/14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현실적 이용상황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용도지역 및 지구 | 소유자 |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 성명 | 송달주소 | 지분 | 성명 | 주소 | 권리종류 | |
| 11 | 간석동 | 산4-1 | 도 | 도로 | 726 | 380 | 보전녹지 근린공원 | 방○겸 |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 | 0.873/14 | | | | |
| | | | | | | | | 방○겸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싯질길 ○ | 1.747/14 | | | | |
| | | | | | | | | 김○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60가길○ | 5.243/14 | | | | |
| | | | | | | | | 방○영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 | 1.747/14 | | | | |
| | | | | | | | | 김○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 | 1.750/14 | | | | |
| | | | | | | | | 남동구 | 남동구 소래로 633 | 1.767/14 | | | | |
| | | | | | | | | 방○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 | 0.873/14 | | | | |
| 12 | 간석동 | 산6-1 | 임 | 임야 | 11,908 | 11,908 | 보전녹지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교육청 | 남동구 정각로 9 | 24.98/100 | | | | |
| | | | | | | | | 인천도시 공사 |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75.02/100 | | | | |
| 13 | 간석동 | 산6-2 | 도 | 법면 | 59 | 59 | 보전녹지 근린공원 | 국(건설 교통부) | | | | | | |
| 14 | 간석동 | 산6-3 | 도 | 녹지 | 99 | 99 | 보전녹지 근린공원 | 국(건설 교통부) | | | | | | |
| 15 | 간석동 | 산6-4 | 임 | 녹지 | 1,488 | 1,488 | 보전녹지 근린공원 | 추○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 | 1/4 | | | | |
| | | | | | | | | 염○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 | 1/4 | | | | |
| | | | | | | | | 이○홍 |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 | 1/4 | | | | |
| | | | | | | | | 조○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494번길 ○ | 1/4 | | | | |
| 16 | 간석동 | 산6-5 | 임 | 임야 | 6,347 | 6,347 | 보전녹지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교육청 | 남동구 정각로 9 | 24.98/100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현실적 이용상황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용도지역 및 지구 | 소유자 |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 성명 | 송달주소 | 지분 | 성명 | 주소 | 권리종류 | |
| | | | | | | | | 인천도시 공사 |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 | 75.02/100 | | | | |
| 17 | 간석동 | 산7-1 | 임 | 녹지 | 298 | 298 | 보전녹지 근린공원 | 추○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 | 1/4 | 인천 교통공사 | 남동구 경인로 674 | 지상권 | |
| | | | | | | | | 엄○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 | 1/4 | | | | |
| | | | | | | | | 이○홍 |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 | 1/4 | | | | |
| | | | | | | | | 조○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494번길 ○ | 1/4 | | | | |
| 18 | 간석동 | 산7-2 | 도 | 도로 | 1,389 | 465 | 보전녹지 근린공원 도로 | 국(건설 교통부) | | | | | | |
| 19 | 간석동 | 산9-1 | 임 | 임야 | 3,570 | 3,570 | 보전녹지 근린공원 | 강○선 | 경기 용인 기흥구 흥덕3로○ | 1/2 | | | | |
| | | | | | | | | 강○훈 | 경기 용인 기흥구 흥덕3로○ | 1/2 | | | | |
| 20 | 간석동 | 산9-2 | 도 | 녹지 | 892 | 878 | 보전녹지 근린공원 1층주거 도로 | 국(건설 교통부) | | | | | | |
| 21 | 간석동 | 산9-3 | 도 | 녹지 | 1,941 | 460 | 보전녹지 근린공원 1층주거 준주거 도로 | 국(기획 재정부) | | | | | | |
| 22 | 간석동 | 산14-1 | 임 | 임야 | 6,379 | 6,147 | 보전녹지 근린공원 1층주거 도로 | 재단법인 ○○○○ 장학재단 | 남동구 간석동 ○ | | | | | |
| 23 | 간석동 | 산15-1 | 임 | 임야 | 8,387 | 8,387 | 보전녹지 근린공원 1층주거 | 윤○ | 부평구 부흥로 ○ | | | | | |
| 24 | 간석동 | 산15-6 | 임 | 운동시 설 | 302 | 302 | 보전녹지 근린공원 1층주거 도로 | 김○제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 | 26315 /65835 | | | | |
| | | | | | | | | 이○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 12825 /65835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현실적 이용상황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용도지역 및 지구 | 소유자 |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 성명 | 송달주소 | 지분 | 성명 | 주소 | 권리종류 | |
| | | | | | | | | 김○흥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 | 8430 /65835 | | | | |
| | | | | | | | | 김○천 |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 | 5620 /65835 | | | | |
| | | | | | | | | 송○숙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16길 ○ | 281 /65835 | | | | |
| | | | | | | | | 송○주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807번길 ○ | 1124 /65835 | | | | |
| | | | | | | | | 김○영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 | 562 /65835 | | | | |
| | | | | | | | | 김○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115번길 ○ | 4215 /65835 | | | | |
| | | | | | | | | 김○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 | 4215 /65835 | | | | |
| | | | | | | | | 김○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16번길 ○ | 1405 /65835 | | | | |
| | | | | | | | | 김○순 |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 | 843 /65835 | | | | |

□ 지장물조사

| 번호 | 소재지 |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단위)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동명 | 지번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 |
| 1-1 | 간석 | 5-7 | 부속락카룸 | 천막 7.5x3.0 | 22.5㎡ | ○○배드 민턴클럽 | 남동구 간석동 ○ | | | | |
| 1-2 | " | " | 사무실 | 천막 10.6x6.0 | 63.6㎡ | " | " | | | | |
| 1-3 | " | " | 수도 | 천막 3.7x1.5 | 5.6㎡ | " | " | | | | |
| 1-4 | " | " | 평상 | 목재 3.5x2.4 | 8.4㎡ | " | " | | | | |
| 1-5 | " | " | 웬스 | H5.0 | 50m | " | " | | | | |
| 2-1 | 간석 | 산3-3 | 수조 | 콘크리트 Φ6.0xH5.0 | 28.3㎡ | 방○영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 | | | | |
| 2-2 | " | " | 철조망 | H1.2 | 130m | " | " | | | | |
| 3 | 간석 | 산4 | 철조망 | H1.2 | 20m | 남동구 | 남동구 소래로 633 | | | | |
| | | | | | | 방○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 | | | | |
| | | | | | | 방○겸 |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 | | | | |
| | | | | | | 방○겸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싯질길 ○ | | | | |
| | | | | | | 김○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60기길○ | | | | |
| | | | | | | 방○겸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싯질길 ○ | | | | |
| 4 | 간석 | 산9-1 | 웬스 | H2.0 | 75m | 강○선 | 경기 용인 기흥구 흥덕3로○ | | | | |
| | | | | | | 강○훈 | 경기 용인 기흥구 흥덕3로○ | | | | |

| 번호 | 소재지 |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 량 (단위)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 고 |
|-----|-----|-------|-----------|------------------|-------------|----------------------|-----------|-------|-----|-----------|-----|
| | 동 명 | 지 번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의 종류 | |
| 5 | 간석 | 산14-1 | 웬스 | H2.0 | 67m | 재단법인 ○○○○ ○○재단 | 남동구 간석동 ○ | | | | |
| 6-1 | 간석 | 산15-1 | 사무실 | 조립식판넬 6.0x4.0 | 29㎡ | ○○배드 민턴클럽 | 남동구 간석동 ○ | | | | |
| 6-2 | " | " | 창고 | 천막 6.0x3.3 | 20㎡ | " | " | | | | |
| 7 | 간석 | 산6-1 | 분묘 | 2.0x2.0 | 4㎡ | 미상 | - | | |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39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문학종합경기장 수익시설(근린생활시설) 설치)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20. 3. 2.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명칭: 문학종합운동장 수익시설(근린생활시설)설치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432,034.6㎡(문학경기장)중 864㎡
- 규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동 증축(연면적: 1,896㎡)

| | | 용도 | 면적(㎡) | 비고 |
|----|----|------------|-------|----|
| A동 | 1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624 | |
| | 2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624 | |
| B동 | 1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40 | |
| | 2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40 | |
| | 3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68 |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사업기간: 2019. 9. 2.~2019. 11.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49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공고(안)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을 처리하고, 같은 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리일자: 2020. 2. 26.
2.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인천광역시 관할 개발제한구역 71.81km²
- 주요 내용

| 구 분 | 시설명 | 사업시행자 | 위 치 | 형질변경면적(m ²) | 건축연면적(m ²) | 비고 |
|---------|-------|--------|--------------------------|-------------------------|--|----|
| 선형·필수시설 | 검암정거장 | 인천교통공사 | 서구 검암동 370-25번지 일원 | 기정: 4,132 (변경없음) | 기정: 3,923.81 변경: 4,414.41 증감: 증 490.60 | |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과, 서구청 도시개발과
4.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 - 550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장

| 등록번호 | 상호 및 대표자 | 영업소재지 |
|----------|----------------------|--|
| 제320382호 | 주식회사 대산과워텍 조기영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인천산업용품 유통단지 A동 B19호(송현동)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54호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따라 한국전쟁 당시 미군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월미도 피해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3.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과거사(월미도 미군 폭격) 피해주민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희생자)로 결정된 자 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0. 3. 2. ~ 3. 16.(15일간)
- 접수기간 : 2020. 3. 17. ~ 4. 15.(30일간)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보훈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별첨)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2008. 2.26.) 사본 1부.
- 피해자(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각1부.
- 유족대표 선정서(별첨)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급여 대상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으로 생계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청시 유의.

3. 지급 대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희생자로) 결정된 이들 중,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4.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희생자)로 결정된 자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피해자(희생자) 유족대표 1인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훈과(☎ 032-440-2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필요서류

| 구 분 | 서 류 | | 비 고 |
|-----------|-----------------------|-------------|--|
| 유족관련 |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 신청서 | | [별지1호 서식] |
| |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서약서 | | |
| | 유족대표 선정시 | 유족대표자 선정서 | 같은 순위 유족이 2인 이상으로, 유족대표를 선정할 경우 [별지2호 서식] |
| | | 유족 인감증명서 | |
| | | 유족대표 신분증 사본 | |
| | 다수인 신청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대표 선정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3호 서식] |
| | 희생자 및 유족의 제적등본 | | 각1부 |
| |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 등록부 | | 각1부 |
| | 위임시 | 위임장 | |
| | | 위임인 인감증명서 | |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
| 입증자료 | 진화위 심의·결정서 | | |
| | 진화위 신청기록 | | |
| | 인우보증서 등 기타 피해입증 자료 | | |
| 공무원 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 신청인 부동의 시 제출 |

※ 유족순위 :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형제자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2020-)

| |
|--------|
| 처리기간 |
| 30일 이내 |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결정 신청서

| | | | | | | |
|-----------------------|------------------|--|------------------|--------------|----|------|
| ① 신청인 | 성 명(한자)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주 소 | | | | | |
| | 피해자(희생자)와의 관계 | 연락처 | 유선전화 : 휴대전화 : | | | |
| ② 피해자 (희생자) 현 황 | 성 명(한자) | () | | | | |
| | 피 해 내 용 | | | | | |
| | 피해입증방법 (증거자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심의·결정서 사본 (등록번호 제 호) | | | | |
| | | 그 외 | | | | |
| ③ 유 족 현 황 | 피해자(희생자)와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피해자(희생자)와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요령: 뒷면 참조

본인은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뒷면)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 | 1. 위원회의 심의결정서 사본 1부. 2. 희생자 및 유족의 제적등본 1부. 3.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 등록부 1부. 4. 유족대표자신청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제출) 1부. 5. 피해사실 등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없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 ①란 : 신청인의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피해자(희생자)와의 관계,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 ②란 : 피해자(희생자)의 성명, 피해내용, 피해입증방법 등을 적습니다.
- ③란: 선순위 유족임을 확인하기 위한 유족 현황을 적습니다.
- ④란: 신청인 본인이 신청자가 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서약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용)

| 신청인 | 성명 | 주소 | 연락처 |
|---------------------|----|----|-----|
|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관련 | | |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됨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어떠한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지원금 결정대상의 취소 등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급정지 및 환수 될 수 있음

■ 신고의무사항

- 과거사 피해주민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 전출로 지원대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사망으로 지원대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환수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착오로 지급된 경우

※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13조(지급정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과거사 피해주민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4조(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로 지급된 경우

- 위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본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거짓 없이 작성·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생활안정금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거주 여부 확인 및 부적격 사유 해당여부 확인, 대상자 검증 및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및 신청서는 준영구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유족대표자 선정서

| | | | | |
|-------|----------------------|--|----------------|---|
| 유족대표자 | 성명(한자) | | 주민등록 번호 | - |
| | 주소 | | | |
| | 희생자(피 해자)와의 관계 | | 유선전화: 휴대전화: | |

본인들은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따라 본인들의 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 | |
|---|----|---------------------------------------|--------|----------|
| 1 | 성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대표자와의 관계 |
| 2 | 성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대표자와의 관계 |
| 3 | 성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대표자와의 관계 |
| 4 | 성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대표자와의 관계 |
| 5 | 성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대표자와의 관계 |

구비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용도 : 지원금 신청용) 각 1부

(뒷면)

[유족대표자 선정방법]

1. 우선순위 유족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대한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유족 중 지원금 지급 신청은 유족의 순위에 따르며 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 유족이 신청자가 될수 있습니다.
 - 가. 최우선순위 유족 :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배우자 및 자녀
 - 나. 가의 해당자가 없을 경우 :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부모
 - 다. 가, 나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손자·손녀
 - 라. 가, 나, 다의 해당자가 없을 경우 :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
3. 위임인이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위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시 해당)

신청인 표시

| | | | | |
|---|---------------|-------|----------------|---|
| 1 | 성명(한자) |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 희생자(피해자)와의 관계 | | 유선전화: 휴대전화: | |
| 2 | 성명(한자) |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 희생자(피해자)와의 관계 | | 유선전화: 휴대전화: | |
| 3 | 성명(한자) |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 희생자(피해자)와의 관계 | | 유선전화: 휴대전화: | |
| 4 | 성명(한자) |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 희생자(피해자)와의 관계 | | 유선전화: 휴대전화: | |
| 5 | 성명(한자) |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 희생자(피해자)와의 관계 | | 유선전화: 휴대전화: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6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대표자) | 등 록 말소일 |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폐업사유 | 비고 |
|------------------|--------------|----------|--|---------|----|
| 밸류에셋(주) (임재우) | 2020. 2. 27. | 인천180004 |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94, 906호(경서동, 청라레이크뷰) | 전문인력 미달 | |

2020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566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

인 천 광 역 시 장

1. 등록 및 폐기사유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예 따른 기관 명칭 변경
2. 최초사용연월일 : 2020. 3. 2.
3. 폐기연월일 : 2020. 3. 2.
4.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참고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 | | |
|---|---|---|---|
|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물품 관리관인 |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물품 출납원인 |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입 세출의현금출납원인 |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수입 금출납원인 |
|  |  |  |  |
|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유가 증권취급공무원인 |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재무 관인 |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지출 원인 |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징수 관인 |
|  |  |  |  |
|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채권 관리관인 |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인 | | |
|  |  | |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 | | |
|---|---|---|---|
| 인천광역시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물품 관리관인 | 인천광역시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물품 출납원인 | 인천광역시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 인천광역시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수입 금출납원인 |
|  |  |  |  |
| 인천광역시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유가 증권취급공무원인 | 인천광역시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재무 관인 | 인천광역시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지출 원인 | 인천광역시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징수 관인 |
|  |  |  |  |
| 인천광역시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채권 관리관인 | 인천광역시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인 | | |
|  |  |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 - 56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3. 2.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 사항 : 소재지 변경

|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 단체명 | 변경사항 | | | 변경일 |
|--|----------------|------|--------------------------------------|-------------------------------|------------|
|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006-0- 인천광역시-37호 (2006.12.14.) | 인천시민 문화예술센터 | 소재지 | 부평구 경인로667번길 4, 3층 (십정동, 서준빌딩) | 미추홀구 주안로 42-1, 3층 (주안동) | 2020.2.2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70호

도시계획시설(검단17호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검단17호 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인천광역시 서구청(공원녹지과 ☎ 032-560-4493)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 3. 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69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 2) 명 칭 : 검단17호근린공원 조성공사

3. 면적 및 규모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면적 (㎡) | 금회실시계획인 가면적(㎡) |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 최초 결정일 |
|----|---------------|-----------|-----------|-------------------|-------------------|--------------------------|
| 최초 | 검단17호 근린공원 | 도시 공원 | 51,000 | 51,000 | - | 1998.06.12. (인고 118호)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별첨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서구청 공원녹지과

붙임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각 1부

□ 토지조사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 지목 | 면 적(m ²) | | 토지소유자 | | | 관계인 | | | 비 고 |
|----|-----|-----|--------|----|----------------------|---------|------------|------------------------|----------------|----------|---------------------------|--------|------------|
| | | | | | 대장 | 편입 | 성명(명칭) | 주 소 | 지분 | 성명(명칭) | 주 소 | 권리의 종류 | |
| | 계 | | | | 94,664 | 51,000 | | | | | | | |
| 1 | 서구 | 왕길동 | 산168-2 | 임 | 1,597.0 | 1,597.0 | 강0례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69번길 00 | | 주식회사00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00(남동공단지점) | 근저당권 | 채무자 강0식 |
| 2 | 서구 | 왕길동 | 산168-3 | 임 | 1,124.0 | 1,124.0 | 김0철 | 인천시 서구 경서동 00 | 374.9 /1124 | 인천광역시서구 | | | |
| | | | | | | | 김0남 | 마전동 00 | 374.5 /1124 | | | | |
| | | | | | | | 김0주 | 서울시 도봉구 번동 00 | 374.6 /1124 | | | | |
| 3 | 서구 | 왕길동 | 산169 | 임 | 4,338.0 | 4,338.0 | 정0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79가길 00 | 1/2 | | | | |
| | | | | | | | 오0아 |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125번길 00 | 1/2 | | | | |
| 4 | 서구 | 왕길동 | 산169-4 | 임 | 228.0 | 228.0 | 인천광역시(도로과) | | | | | | |
| 5 | 서구 | 왕길동 | 산170 | 임 | 1,610.0 | 1,610.0 | 이0정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00 | 1/3 | | | | |
| | | | | | | | 이0진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00 | 1/3 | | | | |
| | | | | | | | 이0훈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00 | 1/3 | | | | |
| 6 | 서구 | 왕길동 | 산170-4 | 임 | 423.0 | 423.0 | 인천광역시(도로과) | | | | | | |
| 7 | 서구 | 왕길동 | 산171 | 임 | 349.0 | 349.0 | 이0순 | 경기도 김포면 걸포리 00 | 1/6 | 인천광역시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 | 대위자 | |
| | | | | | | | 이0채 | 인천 서구 오류동 00 | 1/6 | | | | |
| | | | | | | | 이0호 | 인천 서구 왕길동 00 | 1/6 | | | | |
| | | | | | | | 이0주 | 인천 서구 왕길동 00 | 1/6 | | | | |
| | | | | | | | 이0순 | 인천 서구 왕길동 00 | 1/6 | | | | |
| | | | | | | | 이0재 | 인천 서구 오류동 00 | 1/6 | | | | |
| 8 | 서구 | 왕길동 | 산171-5 | 임 | 322.0 | 322.0 | 이0순 | 경기도 김포면 걸포리 00 | 1/6 | 인천광역시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 | 대위자 | |
| | | | | | | | 이0주 | 인천 서구 왕길동 00 | 1/6 | | | | |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 지목 | 면 적(m ²) | | 토지소유자 | | | 관계인 | | | 비 고 |
|----|-----|-----|--------|----|----------------------|----------|------------|----------------------|-----|----------|---------------------------|--------|------------|
| | | | | | 대장 | 편입 | 성명(명칭) | 주 소 | 지분 | 성명(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 |
| | | | | | | | 이0채 | 인천 서구 오류동 00 | 1/6 | | | | |
| | | | | | | | 이0재 | 인천 서구 오류동 00 | 1/6 | | | | |
| | | | | | | | 이0순 | 인천 서구 왕길동 00 | 1/6 | | | | |
| | | | | | | | 이0호 | 인천 서구 왕길동 00 | 1/6 | | | | |
| 9 | 서구 | 왕길동 | 517-4 | 도 | 1,535.0 | 689.9 | 인천광역시(도로과) | | | | | | |
| 10 | 서구 | 왕길동 | 517-11 | 임 | 701.0 | 624.0 | 최0복 |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00 | | 00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00(인천원당지점) | 근저당권 | |
| 11 | 서구 | 왕길동 | 517-18 | 임 | 3,890.0 | 3,890.0 | 강0례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69번길 00 | | 주식회사00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00(남동공단지점) | 근저당권 | 채무자 강0식 |
| 12 | 서구 | 왕길동 | 517-23 | 도 | 72.0 | 54.7 | 하0열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00 | | | | | |
| 13 | 서구 | 왕길동 | 517-25 | 임 | 573.0 | 573.0 | 하0열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00 | | | | | |
| 14 | 서구 | 왕길동 | 517-26 | 도 | 3,247.0 | 3,127.4 | 인천광역시(도로과) | | | | | | |
| 15 | 서구 | 왕길동 | 597 | 전 | 169.0 | 169.0 | 김0영 |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00 | | | | | |
| 16 | 서구 | 왕길동 | 597-1 | 전 | 245.0 | 245.0 | 김0영 |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00 | | | | | |
| 17 | 서구 | 왕길동 | 598 | 전 | 1,319.0 | 1,319.0 | 차0남 |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00 | | | | | |
| 18 | 서구 | 왕길동 | 598-12 | 도 | 229.0 | 225.0 | 인천광역시(도로과) | | | | | | |
| 19 | 서구 | 왕길동 | 598-13 | 도 | 174.0 | 140.4 | 인천광역시(도로과) | | | | | | |
| 20 | 서구 | 왕길동 | 598-18 | 도 | 193.0 | 193.0 | 인천광역시(도로과) | | | | | | |
| 21 | 서구 | 왕길동 | 598-20 | 전 | 9.0 | 9.0 | 인천광역시(도로과) | | | | | | |
| 22 | 서구 | 왕길동 | 599 | 전 | 660.0 | 660.0 | 장0화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00 | | | | | |
| 23 | 서구 | 오류동 | 산28-1 | 임 | 48,730.0 | 14,305.3 | 광주00공파총회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17번길 00 | | | | | |
| 24 | 서구 | 오류동 | 산28-7 | 임 | 106.0 | 80.2 | 광주00공파총회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17번길 00 | | | | | |
| 25 | 서구 | 오류동 | 850-25 | 도 | 16.0 | 0.7 | 광주00공파총회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17번길 00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 지목 | 면 적(m ²) | | 토지소유자 | | | 관계인 | | | 비 고 |
|----|-----|-----|-------|----|----------------------|---------|----------|------------------------|-----|----------|------------------------------|--------|-----|
| | | | | | 대장 | 편입 | 성명(명칭) | 주 소 | 지분 | 성명(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 |
| 26 | 서구 | 오류동 | 851-1 | 대 | 778.0 | 5.3 | 한0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00 | | | | | |
| 27 | 서구 | 오류동 | 851-4 | 도 | 93.0 | 5.4 | 한0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00 | | | | | |
| 28 | 서구 | 오류동 | 852 | 대 | 990.0 | 657.5 | 이0연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천로158번길 00 | 1/2 | 연수00금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00 | 근저당권 | |
| | | | | | | | 이0순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05번길 00 | 1/2 | | | | |
| 29 | 서구 | 오류동 | 852-3 | 전 | 1,422.0 | 41.5 | 안0순 | 인천 서구 왕길동 00 | | | | | |
| 30 | 서구 | 오류동 | 852-4 | 대 | 990.0 | 953.6 | 이0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5번길 00 | | | | | |
| 31 | 서구 | 오류동 | 852-5 | 대 | 661.0 | 627.5 | 한0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00 | | | | | |
| 32 | 서구 | 오류동 | 852-6 | 대 | 661.0 | 121.1 | 이0석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40번길 00 | | | | | |
| 33 | 서구 | 오류동 | 852-7 | 전 | 687.0 | 98.8 | 이0석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40번길 00 | | | | | |
| 34 | 서구 | 오류동 | 853 | 전 | 165.0 | 134.0 | 이0철 |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00 | | | | | |
| 35 | 서구 | 오류동 | 854 | 임 | 922.0 | 6.4 | 김0기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00 | | | | | |
| 36 | 서구 | 오류동 | 855 | 대 | 346.0 | 0.3 | 차0화 | 인천서구 오류동 00 | | 주식회사00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00(성남공단금융센터) | 근저당권 | |
| 37 | 서구 | 오류동 | 855-2 | 전 | 787.0 | 198.5 | 차0화 | 인천서구 오류동 00 | | 주식회사00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00(성남공단금융센터) | 근저당권 | |
| 38 | 서구 | 오류동 | 858 | 전 | 215.0 | 130.0 | 박0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0 | | | | | |
| 39 | 서구 | 오류동 | 858-1 | 임 | 792.0 | 6.6 | 광주00공파중회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17번길 00 | | | | | |
| 40 | 서구 | 오류동 | 859 | 전 | 1,220.0 | 176.0 | 광주00공파중회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17번길 00 | | | | | |
| 41 | 서구 | 오류동 | 860 | 전 | 436.0 | 401.1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53번길 00 | | | | | |
| 42 | 서구 | 오류동 | 861-1 | 대 | 660.0 | 660.0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53번길 00 | | | | | |
| 43 | 서구 | 오류동 | 861-2 | 답 | 1,845.0 | 1,845.0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53번길 00 | | | | | |
| 44 | 서구 | 오류동 | 861-3 | 답 | 1,256.0 | 1,251.5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53번길 00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 지목 | 면 적(m ²) | | 토지소유자 | | | 관계인 | | | 비 고 |
|----|-----|-----|-------|----|----------------------|---------|--------|-------------------------|----|--------|----|--------|-----|
| | | | | | 대장 | 편입 | 성명(명칭) | 주 소 | 지분 | 성명(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 |
| 45 | 서구 | 오류동 | 861-4 | 답 | 434.0 | 434.0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53번길 00 | | | | | |
| 46 | 서구 | 오류동 | 862 | 대 | 628.0 | 626.3 | 한0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00 | | | | | |
| 47 | 서구 | 오류동 | 862-1 | 답 | 1,304.0 | 863.8 | 한0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00 | | | | | |
| 48 | 서구 | 오류동 | 862-2 | 도 | 42.0 | 42.0 | 한0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00 | | | | | |
| 49 | 서구 | 오류동 | 863 | 잡 | 658.0 | 633.7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53번길 00 | | | | | |
| 50 | 서구 | 오류동 | 863-1 | 전 | 327.0 | 327.0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53번길 00 | | | | | |
| 51 | 서구 | 오류동 | 863-3 | 대 | 682.0 | 682.0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53번길 00 | | | | | |
| 52 | 서구 | 오류동 | 863-4 | 전 | 3,804.0 | 3,774.5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53번길 00 | | | | | |

□ 지장물조사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용도 | 구조 | 수량 | 단위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구분 | |
| 1 | 왕길동 | 산168-2 | 건물 | 철골 | 0.95 | m ² | 강0례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0 | 주식회사 00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0 | 근저당권 | |
| | | | 건물 | 목재 | 8.10 | m ² | | | | | | |
| 2 | 왕길동 | 산169 | 건물 | 함박 | 62.74 | m ² | 정0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0 | | | | |
| | | | 건물 | 철골 | 9.28 | m ² | | | | | | |
| | | | 건물 | 스래브 | 218.62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12.40 | m ² | | | | | | |
| 3 | 왕길동 | 517-4 | 건물 | 목재 | 1.24 | m ² | 인천광역시 (도로과) | | | | | |
| 4 | 왕길동 | 517-18 | 건물 | 스래브 | 61.74 | m ² | 강0례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0 | 주식회사 00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0 | 근저당권 | |
| | | | 건물 | 함박 | 34.85 | | | | | | | |
| | | | 건물 | 목재 | 1.48 | | | | | | | |
| | | | 건물 | 콘테이너 | 27.24 | | | | | | | |
| | | | 창고 | 천막 | 42.12 | | | | | | | |
| | | | 창고 | 천막 | 222.28 | | | | | | | |
| | | | 창고 | 천막 | 185.64 | | | | | | | |
| 5 | 왕길동 | 517-25 | 건물 | 콘테이너 | 17.79 | m ² | 하0열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 0 | | | | |
| 6 | 왕길동 | 597 | 건물 | 콘테이너 | 34.08 | m ² | 김0영 |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0 | | | | |
| 7 | 왕길동 | 597-1 | 건물 | 콘테이너 | 12.86 | m ² | 김0영 |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0 | | | | |
| 8 | 왕길동 | 598 | 건물 | 판넬 | 6.28 | m ² | 차0남 |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0 | | | | |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용도 | 구조 | 수량 | 단위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구분 | |
| 9 | 왕길동 | 599 | 건물 | 판넬 | 5.57 | m ² | 장0화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0 | | | | |
| 10 | 오류동 | 산28-1 | 닭장 | 판넬 | 12.90 | m ² | 광주00공파 중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 0 | | | | |
| 11 | 오류동 | 852 | 건물 | 스래브 | 138.60 | m ² | 이0연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0 | 00새마을금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0 | 근저당권 | |
| | | | 창고 | 천막 | 20.64 | m ² | | | | | | |
| 12 | 오류동 | 852-4 | 건물 | 스래브 | 163.65 | m ² | 이0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0 | | | | |
| | | | 건물 | 스래브 | 4.18 | m ² | | | | | | |
| | | | 건물 | 스래브 | 30.96 | m ² | | | | | | |
| | | | 건물 | 컨테이너 | 17.79 | m ² | | | | | | |
| | | | 건물 | 컨테이너 | 25.65 | m ² | | | | | | |
| | | | 건물 | 컨테이너 | 39.54 | m ² | | | | | | |
| | | | 건물 | 컨테이너 | 18.57 | m ² | | | | | | |
| | | | 건물 | 컨테이너 | 6.36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197.40 | m ² | | | | | | |
| 13 | 오류동 | 852-5 | 건물 | 스래브 | 183.30 | m ² | 한0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0 | | | | |
| | | | 건물 | 스래브 | 33.37 | m ² | | | | | | |
| | | | 건물 | 컨테이너 | 34.99 | m ² | | | | | | |
| | | | 건물 | 컨테이너 | 17.33 | m ² | | | | | | |
| | | | 건물 | 이동화장실 | 1.29 | m ² |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용도 | 구조 | 수량 | 단위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구분 | |
| | | | 창고 | 천막 | 3.95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39.49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68.25 | m ² | | | | | | |
| 14 | 오류동 | 852-6 | 건물 | 함박 | 9.60 | m ² | 이0석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0 | | | | |
| | | | 건물 | 스래브 | 4.96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40.40 | m ² | | | | | | |
| 15 | 오류동 | 855-2 | 창고 | 천막 | 20.64 | m ² | 차0화 | 인천서구 오류동 0 | 주식회사 00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0 | 근저당권 | |
| 16 | 오류동 | 860 | 건물 | 함박 | 22.47 | m ²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0 | | | | |
| | | | 건물 | 목재 | 3.61 | m ² | | | | | | |
| | | | 건물 | 콘테이너 | 22.26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26.06 | m ² | | | | | | |
| 17 | 오류동 | 861-1 | 건물 | 콘테이너 | 15.15 | m ²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0 | | | | |
| | | | 건물 | 판넬 | 10.14 | m ² | | | | | | |
| | | | 건물 | 판넬 | 2.91 | m ² | | | | | | |
| | | | 건물 | 스래브 | 189.96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307.51 | m ² | | | | | | |
| 18 | 오류동 | 861-2 | 건물 | 콘테이너 | 17.49 | m ²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0 | | | | |
| | | | 건물 | 콘크리트 | 194.58 | m ² | | | | | | |
| | | | 건물 | 이동화장실 | 0.05 | m ² |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용도 | 구조 | 수량 | 단위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구분 | |
| | | | 건물 | 컨테이너 | 9.93 | m ² | | | | | | |
| | | | 건물 | 목재 | 21.5 | m ² | | | | | | |
| | | | 건물 | 스래브 | 34.96 | m ² | | | | | | |
| | | | 건물 | 스래브 | 39.96 | m ² | | | | | | |
| | | | 건물 | 컨테이너 | 33.17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169.04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91.53 | m ² | | | | | | |
| 19 | 오류동 | 861-3 | 건물 | 이동화장실 | 2.60 | m ²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0 | | | | |
| | | | 건물 | 컨테이너 | 19.65 | m ² | | | | | | |
| | | | 건물 | 목재 | 6.47 | m ² | | | | | | |
| | | | 건물 | 함박 | 56.65 | m ² | | | | | | |
| | | | 건물 | 판넬 | 10.44 | m ² | | | | | | |
| | | | 건물 | 스래브 | 7.82 | m ² | | | | | | |
| | | | 창고 | 스래브 | 13.31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191.44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17.13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1.72 | m ² | | | | | | |
| 20 | 오류동 | 861-4 | 건물 | 판넬 | 11.54 | m ²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0 | | | | |
| | | | 창고 | 천막 | 7.14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47.87 | m ² | | | | | | |
| 21 | 오류동 | 862 | 건물 | 컨테이너 | 3.65 | m ² | 한0혁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0 | | | | |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용도 | 구조 | 수량 | 단위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구분 | |
| | | | 건물 | 컨테이너 | 2.57 | m ² | | | | | | |
| | | | 건물 | 스래브 | 197.74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69.91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72.96 | m ² | | | | | | |
| 22 | 오류동 | 862-1 | 건물 | 이동화장실 | 0.72 | m ² | 한0혁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0 | | | | |
| | | | 건물 | 이동화장실 | 1.42 | m ² | | | | | | |
| | | | 건물 | 컨테이너 | 2.67 | m ² | | | | | | |
| | | | 건물 | 컨테이너 | 23.00 | m ² | | | | | | |
| | | | 건물 | 컨테이너 | 18.39 | m ² | | | | | | |
| | | | 건물 | 가건물 | 6.54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119.34 | m ² | | | | | | |
| 23 | 오류동 | 863 | 건물 | 이동화장실 | 3.16 | m ²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0 | | | | |
| | | | 건물 | 목재 | 11.91 | m ² | | | | | | |
| | | | 건물 | 컨테이너 | 18.05 | m ² | | | | | | |
| | | | 건물 | 스래브 | 198.12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64.87 | m ² | | | | | | |
| 24 | 오류동 | 863-1 | 건물 | 함박 | 7.53 | m ²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0 | | | | |
| | | | 건물 | 목재 | 14.94 | m ² | | | | | | |
| 25 | 오류동 | 863-3 | 건물 | 스래브 | 5.96 | m ²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0 | | | | |
| | | | 건물 | 함박 | 216.66 | m ² |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용도 | 구조 | 수량 | 단위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구분 | |
| | | | 건물 | 목재 | 10.73 | m ² | | | | | | |
| | | | 건물 | 콘테이너 | 0.6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259.98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25.8 | m ² | | | | | | |
| 26 | 오류동 | 863-4 | 건물 | 콘테이너 | 17.1 | m ² | 김0안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0 | | | | |
| | | | 건물 | 목재 | 9.34 | m ² | | | | | | |
| | | | 건물 | 콘테이너 | 8.94 | m ² | | | | | | |
| | | | 건물 | 가건물 | 7.21 | m ² | | | | | | |
| | | | 건물 | 콘테이너 | 18.62 | m ² | | | | | | |
| | | | 건물 | 콘테이너 | 18.90 | m ² | | | | | | |
| | | | 건물 | 콘테이너 | 17.05 | m ² | | | | | | |
| | | | 건물 | 목재 | 26.17 | m ² | | | | | | |
| | | | 건물 | 목재 | 6.66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399.97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29.16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331.79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50.95 | m ² | | | | | | |
| | | | 창고 | 천막 | 14.67 | m ² | | | | | | |
| 창고 | 천막 | 189.75 | m ² | | | | | | | | | |
| <분묘> | | | | | | | | | | | | |
| 1 | 왕길동 | 산168-3 | 분묘 | 흙 | 1 | 기 | 김0철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0 | | | | |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용도 | 구조 | 수량 | 단위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구분 | |
| 2 | | | 분묘 | 흙 | 1 | 기 | | | | | | |
| 3 | | | 분묘 | 흙 | 1 | 기 | | | | | | |
| 4 | | | 분묘 | 흙 | 1 | 기 | | | | | | |
| 5 | | 599 | 분묘 | 흙 | 1 | 기 | 장0화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0 | | | | |
| 6 | 오류동 | 산28-1 | 분묘 | 흙 | 1 | 기 | 광주00공파 중회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0 | | | | |
| 7 | | | 분묘 | 흙 | 1 | 기 | | | | | | |
| 8 | | | 분묘 | 흙 | 1 | 기 | | | | | | |
| 9 | | | 분묘 | 흙 | 1 | 기 | | | | | | |
| 10 | | | 분묘 | 흙 | 1 | 기 | | | | | | |
| 11 | | | 분묘 | 흙 | 1 | 기 | | | | | | |
| 12 | | | 분묘 | 흙 | 1 | 기 | | | | | | |
| 13 | | 853 | 분묘 | 흙 | 1 | 기 | 이0철 |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0 | | | | |
| 14 | | 858 | 분묘 | 흙 | 1 | 기 | 박0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 | | | | |
| 15 | | | 분묘 | 흙 | 1 | 기 | | | | | | |
| 16 | 분묘 | | 흙 | 1 | 기 | | | | | | | |
| <전주, 체신주> | | | | | | | | | | | | |
| 1 | 왕길동 | 517-18 | 한전주 | 8427D321 | | | 한국전력공사 | | | | | |
| 2 | 왕길동 | 517-18 | 체신주 | 802-1 | | | - | | | | | |
| 3 | 왕길동 | 517-18 | 체신주 | C21314261450 | | | -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용도 | 구조 | 수량 | 단위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구분 | |
| 4 | 왕길동 | 517-18 | 한전주 | 8427D322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5 | 왕길동 | 517-18 | 한전주 | -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6 | 왕길동 | 517-18 | 한전주 | -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7 | 왕길동 | 517-18 | 체신주 | - | | | | - | | | | |
| 8 | 왕길동 | 517-18 | 한전주 | -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9 | 왕길동 | 517-18 | 한전주 | -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10 | 왕길동 | 517-25 | 한전주 | 8427Q311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11 | 오류동 | 산28-1 | 체신주 | - | | | | - | | | | |
| 12 | 오류동 | 852-4 | 체신주 | 18L6-1 | | | | - | | | | |
| 13 | 오류동 | 852-4 | 한전주 | 8427D044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14 | 오류동 | 852-4 | 한전주 | -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15 | 오류동 | 852-5 | 한전주 | -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16 | 오류동 | 860 | 체신주 | 18L11 | | | | - | | | | |
| 17 | 오류동 | 861-2 | 한전주 | -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18 | 오류동 | 861-2 | 한전주 | 8427D141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19 | 오류동 | 861-2 | 한전주 | -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20 | 오류동 | 861-2 | 체신주 | - | | | | - | | | | |
| 21 | 오류동 | 861-2 | 체신주 | C702181631 | | | | - | | | | |
| 22 | 오류동 | 861-2 | 한전주 | 8427D132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23 | 오류동 | 861-3 | 체신주 | F209R101/F234R205 | | | | - | | | | |
| 24 | 오류동 | 861-3 | 체신주 | 43374 | | | |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용도 | 구조 | 수량 | 단위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구분 | |
| 25 | 오류동 | 861-3 | 한전주 | 8427D241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26 | 오류동 | 861-3 | 한전주 | 8427D242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27 | 오류동 | 862 | 한전주 | 8427D033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28 | 오류동 | 862 | 체신주 | C702182331 | | | | - | | | | |
| 29 | 오류동 | 862-1 | 한전주 | 8427D043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30 | 오류동 | 863-3 | 한전주 | -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31 | 오류동 | 863-3 | 한전주 | -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32 | 오류동 | 863-4 | 체신주 | K9182929 | | | | - | | | | |
| 33 | 오류동 | 863-4 | 한전주 | 8427D032 | | | | 한국전력공사 | | |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71호

도시계획시설(북산역사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북산역사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산림공원과 ☎ 032-930-3879)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 3. 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청리 78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역사공원)
- 2) 명 칭 : 북산역사공원 조성공사

3. 면적 및 규모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면적 (㎡) | 금회실시계획인 가면적(㎡) |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 최초 결정일 |
|----|------------|-----------|-----------|-------------------|-------------------|--------------------------|
| 최초 | 북산 역사공원 | 도시 공원 | 19,528 | 19,528 | - | 1972.08.23. (건고 380호)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별첨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강화군 산림공원과

붙임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각 1부

□ 토지조서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 지목 | 면 적(m ²)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 고 |
|----|-----|-----|--------|----|----------------------|--------|--------|----------------------|--------------|----------------------|--------------|-----|
| | | | | | 대장 | 편입 | 성명(명칭) | 주 소 | 성명(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 |
| | 계 | | | | 19,528 | 19,528 | | | | | | |
| 1 | 강화군 | 관청리 | 750-19 | 대 | 142 | 142 | 기획재정부 | | | | | |
| 2 | 강화군 | 관청리 | 750-40 | 대 | 50 | 50 | 기획재정부 | | | | | |
| 3 | 강화군 | 관청리 | 750-46 | 전 | 1,393 | 1,393 | 기획재정부 | | | | | |
| 4 | 강화군 | 관청리 | 750-47 | 도 | 642 | 642 | 기획재정부 | | | | | |
| 5 | 강화군 | 관청리 | 750-49 | 도 | 179 | 179 | 국토해양부 | | | | | |
| 6 | 강화군 | 관청리 | 779 | 대 | 429 | 429 | 최○명 |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 주식회사 ○○은행 | 서울시 중구 소공로 ○ | 근저당권 | |
| 7 | 강화군 | 관청리 | 779-3 | 도 | 124 | 124 | 강화군 | | | | | |
| 8 | 강화군 | 관청리 | 780 | 전 | 1,164 | 1,164 | 최○명 |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 강화군 ○○조합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 근저당권 | |
| | | | | | | | | | 강화○○ 금고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 근저당권, 지상권 | |
| 9 | 강화군 | 관청리 | 781-1 | 전 | 298 | 298 | 강화군 | | | | | |
| 10 | 강화군 | 관청리 | 782-1 | 전 | 2,952 | 2,952 | 강화군 | | | | | |
| 11 | 강화군 | 관청리 | 782-2 | 전 | 1,094 | 1,094 | 강화군 | | | | | |
| 12 | 강화군 | 관청리 | 783-5 | 전 | 1,488 | 1,488 | 한○희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궁골11번길 ○ | | | | |
| 13 | 강화군 | 관청리 | 783-6 | 대 | 1,993 | 1,993 | 강화군 | | | | | |
| 14 | 강화군 | 관청리 | 783-7 | 대 | 106 | 106 | 강화군 | | | | | |
| 15 | 강화군 | 관청리 | 783-8 | 도 | 444 | 444 | 강화군 | | | | | |
| 16 | 강화군 | 관청리 | 산39-3 | 임 | 205 | 205 | 최○명 |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 | | | |
| 17 | 강화군 | 관청리 | 산39-5 | 임 | 39 | 39 | 강화군 | | | | | |
| 18 | 강화군 | 관청리 | 산39-6 | 도 | 3 | 3 | 강화군 | | | | | |
| 19 | 강화군 | 관청리 | 산39-7 | 도 | 79 | 79 | 강화군 | | | | | |
| 20 | 강화군 | 관청리 | 산39-8 | 임 | 6,704 | 6,704 | 최○명 |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 강화군 ○○조합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 근저당권, 지상권 | |

□ 지장물조사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용도 | 구조 | 수량 | 단위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구분 | |
| 1 | 관청리 | 779 | 음식점 | 벽돌조 | 91.22 | m ² | 최○명 |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 주식회사 ○○은행 | 서울시 중구 소공로 ○ | 근저당권 | |
| 2 | | | 창고 | 판넬 | 4.16 | m ² | | | | | | |
| 3 | | | 창고 | 시멘트슬라브 | 13.72 | m ² | | | | | | |
| 4 | | | 포장 | 콘크리트 | 337.78 | m ² | | | | | | |
| 5 | | | 담장 | - | 11 | m | | | | | | |
| 6 | | | 파라솔 | - | 7 | 개 | | | | | | |
| 7 | | | 비닐하우스 | 통로 | 60 | m ² | | | | | | |
| 8 | | | 포장 | 테라스 | 26 | m ² | | | | | | |
| 9 | | | 비닐하우스 | - | 16 | m ² | | | | | | |
| 10 | | | 차양 | - | 2 | 개 | | | | | | |
| 11 | | | 철재계단 | - | 1 | 식 | | | | | | |
| 12 | | | 간판 | - | 1 | 개 | | | | |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 - 57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등록사업자 | 대표자 | 등록 연월일 | 등록번호 | 자본금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비고 |
|-----------------|-----|--------------|----------|------------------|---|----|
| 롯데송도쇼핑 타운(주) | 김두원 | 2020. 2. 28. | 인천200003 | 106,578,335,000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제이,에프동 제10층 제에프동 1005호(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월드)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7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공고

- 1) 업 체 명 : 고려소각로공업(주)
- 2) 대 표 자 : 곽수온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326 (남촌동)
-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67호
- 6) 등 록 일 자 : 2010. 9. 2.
- 7) 말 소 사 유 : 자진반납
- 8) 말 소 일 자 : 2020. 2. 28.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24호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시장에게 위임된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공개대상기관 및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로 변경
-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공개대상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5조)
- 정보의 공개방법을 명시함.(안 제6조)
-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7조)

- 시장은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 정보공개책임관의 운영 및 사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obw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2-440-6212)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자 | 해당조항 | 찬·반 여부 및 사유 | 비고 |
|---------|------|-------------|----|
| ○ 주 소 : | | | |
| ○ 성 명 : | | | |
| ○ 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등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 나. 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나 소속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공사 등의 장 및 3급 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주요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사업소 및 공사 등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한 계획

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시장이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시 소속기관, 공사 등, 시의 사무 수탁기관,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및 자치구 등에 대한 평가결과
4. 교량·터널·지하철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5. 교량·터널·지하철 등에 대한 시설안전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6. 재난 및 수해방지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7.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 내용
8. 제7호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 내용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10.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1. 시정과 관련하여 주최한 공청회 결과
12. 민원업무처리 관련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3.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관한 사항
14.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15. 시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 및 내용

16.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1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주기, 시기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④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부담하는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시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1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적용의 예외)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시민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 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일백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3. 작성자

시민봉사과장 강영식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25호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정의 등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상위법과의 혼란을 방지하고,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준수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항)
-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제6조 ~ 제9조 삭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종사자 등의 비밀준수 의무를 신설함.
(안 제7조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obw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2-440-621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자 | 해당조항 | 찬·반 여부 및 사유 | 비고 |
|---------|------|-------------|----|
| ○ 주소 : | | | |
| ○ 성명 : | | | |
| ○ 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조례”를 “이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민”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를 “범죄피해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으로 한다.

-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2조)의 제목 “(표창)”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창을 수여”를 “포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정의) ① 「<u>범죄피해자 보호법</u>」(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범죄피해자</u>”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p> <p>2. “<u>범죄피해자 보호·지원</u>”이란 <u>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u>를 말한다.</p> <p>3. (생략)</p> <p><u><신설></u></p> <p>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u>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u>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p> | <p>제2조(정의) ① <u>이 조례</u>----- -----.</p> <p>1. “<u>범죄피해자</u>”란 「<u>범죄피해자 보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u>인천광역시</u>(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 --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 -----.</p> <p>3. (현행과 같음)</p> <p>4. “<u>범죄피해자 지원법인</u>”이란 <u>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시에 소재한 법인</u>을 말한다.</p> <p>② <u>제1항제1호</u>----- ----- -----</p> |

| 현행 | 개정안 |
|---|---|
| <p>범죄피해자로 본다.</p> <p>제4조(시민의 책무) <u>인천광역시민</u> (이하 “<u>시민</u>”이라 한다)은 범죄 피해자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u>인천광역시</u>(이하 “<u>시</u>”라 한다)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 <p>-----.</p> <p>제4조(시민의 책무) <u>인천광역시민</u></p> <p>-----</p> <p>-----</p> <p>-----</p> <p>-----</p> <p>----- <u>시</u>-----</p> <p>-----</p> <p>-----</p> <p>-----.</p> |
| <p>제5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u>범죄피해자지원종합계획</u> (이하 “<u>종합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종합계획</u>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법 제1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u></p> <p>2. 3. (생략)</p> <p>4. <u>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u></p> | <p>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u>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 <u>시행계획</u>-----</p> <p>-----.</p> <p>1. <u>범죄피해자</u> -----</p> <p>-----</p> <p>-----</p> <p>2. 3. (현행과 같음)</p> <p>4. -----</p> <p>-----</p> <p>----- <u>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u></p> |

| 현행 | 개정안 |
|--|---|
| <p>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p> <p>5. (생략)</p> <p>제6조(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p> <p>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피해자지원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 <p>-----</p> <p>-----</p> <p>5. (현행과 같음)</p> <p>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

| 현행 | 개정안 |
|--|---|
| <p><u>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u>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위촉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u> <u>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u>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 <p><u>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u></p> |
| <p><u>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 <p><u><삭 제></u></p> |
| <p><u>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u></p> | <p><u><삭 제></u></p> |
| <p><u>제10조·제11조 (생략)</u></p> | <p><u>제8조·제9조(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u></p> |

| 현행 | 개정안 |
|---|--|
| <p><u>제12조(표창)</u>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표창</u>을 수여할 수 있다.</p> | <p><u>제10조(포상)</u> ----- ----- ----- ----- <u>포상</u>----- -----.</p> |
| <p><u>제13조</u> (생략)</p> | <p><u>제11조</u> (현행 제13조와 같음)</p> |

[붙임 1]**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가되는 요인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장 김재범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2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공용면적 증가로 시설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사용요율 변경으로 농산물 유통비용을 낮춤으로써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산물도매시장 연간 시설사용료를 현행 “50”을 “30”으로, “저온저장 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를 추가함.

(안 제1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6.(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 회의장(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 - 6232, 팩스 032)440 - 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자 | 해당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
| ○ 주 소 : | | | |
| ○ 성 명 : | | | |
| ○ 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라.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며, 저온저장고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1조(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① ~ ③ (생략)</p> <p>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 <p>제11조(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며, 저온저장고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로 한다.</u></p>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 | |
|--------------|---|
| 관계법령 |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2조(사용료)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4조(사용료)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 [별표2]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
|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법령 발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전문개정 2009. 4. 2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5.>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7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이하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

나. 삭제 <2017. 6. 9.>

다.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2.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②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5., 2017. 6. 9., 2019. 8. 26.>

1.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2.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0. 15.>

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④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⑤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2017. 6. 9.>

⑥ 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⑦ 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4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2017. 6. 9.>

⑧ 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1. 정률(定率)의 경우: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2. 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원

[전문개정 2012. 8. 2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6. 9.>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 (제44조제1항 관련)

| 부류별 | 양 곡 | 청 과 | 수 산 | 축 산 |
|--------|---|---|--|---|
| 필 수 시설 | 경매장(유개[有蓋]), 주차장, 저온창고(농수산물도매시장만 해당한다), 쓰레기처리장, 위생시설(수세식 화장실), 사무실, 하주대기실 · 출하상담실 | | | |
| 부 수 시설 | 상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 저온창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만 해당한다), 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재발효 및 추열실,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소각시설, 농산물 품질관리실, 대금정산조직 사무실, 수출지원실 | 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제빙시설, 염장조, 염장실,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소각시설, 용융기, 대금정산조직 사무실, 수출지원실 | 식육운반차량, 중도매인 사무실, 축산물 위생검사시설 및 사무실, 도체등급판정시설 및 사무실, 부산물처리시설, 농산물 품질관리실, 부분육가공처리시설, 대금정산조직 사무실 |
| 기 타 시설 | 가. 회의실, 경비실, 기계실등 나. 금융기관의 점포 다.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 |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 사용요율 변경으로 인한 세입감소

나.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1조제4항
(시설사용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저온창고 와 부수시설 사용요율 변경으로 인한 세입 감소
- 해당 조례에 세출예산은 발생하지 않음.

나. 추계 결과 : 세입 903백만 원 감소

다. 재원조달방안 : 세입 감소분에 대한 시비 지원 필요

3.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1차년도 (2020년) | | 2차년도 (2021년) | 3차년도 (2022년) | 4차년도 (2023년) | 5차년도 (2024년) | 계 |
|--------|----------------|-----------------|-------|-----------------|-----------------|-----------------|-----------------|-------|
| | | 개정전 | 개정후 | | | | | |
| 세 입 | 구월시장 시설사용료 | 1,863 | 1,047 | 1,047 | 1,047 | 1,047 | 1,047 | 5,235 |
| | 삼산시장 재산임대수입 | 188 | 101 | 104 | 107 | 110 | 113 | 535 |
| | 소 계 | 2,051 | 1,148 | 1,151 | 1,154 | 1,157 | 1,160 | 5,770 |
| 세 출 | △△△ | | | 해 | 당 | 없 | 음 | |
| | 소 계 | | | | | | | |
| 재원 조달 | | | | | | | | |
| 국 비 | | | | | | | | |
| 시 비 | 소 계 | | | | | | | |
| | 일반 회계 | | | | | | | |
| | 특별 회계 | | | | | | | |
| | 기금 | | | | | | | |
| 군·구비 | | | | | | | | |
| 민 간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군·구 |
|-----|

인천광역시미추홀구고시 제2020-39호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62-19번지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명칭: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구상모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3가)
3. 공동사업주체: 현대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4.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62-19번지 일대
 - 나. 대지면적 : 15,059.2m²
 - 다. 규 모 : 지하 4층~지상 47층, 주5개동 및 부속18개동
공동주택 7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264호) 및 근린생활시설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2020. 2. 28.
6. 사업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23. 1. 31.

7. 의제처리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8.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880-44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고시 제2020-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호선 외 3개노선, 공원: 송의소공원】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호선, 중로2-3호선, 소로2-1호선, 소로3-1호선, 공원: 송의소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시계획시설(도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79-4번지 일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79-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호선, 중로2-3호선, 소로2-1호선, 소로3-1호선, 공원: 송의소공원)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호선 외 3개 노선, 공원: 송의소공원)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시 설 명 | 면 적(m ²) | 규 모 | 비고 |
|---------|----------------------|-----------------|----|
| 대로2-6호선 | 155.86 | L=50m, B=30~33m | |
| 중로2-3호선 | 287.17 | L=90m, B=15~18m | |
| 소로2-1호선 | 838.37 | L=84m, B=10m | |
| 소로3-1호선 | 357.60 | L=137m, B=3m | |
| 송의 소공원 | 217.00 | | |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구상모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43, 2층(신흥동3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토지조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붙임. 토지조서』의 토지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8.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880-4463) 및 도시계획과(☎880-448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붙임. 토지조서】

1. 대로 2-6호선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관계내용 | 성명 | 주소 | |
| 1 | 미추홀구 송의동 | 334 | 도 | 2,794.00 | 25.30 | 인천광역시 남구 | | - | - | - | |
| 2 | 미추홀구 송의동 | 379-28 | 대 | 42.30 | 16.51 | 유인성 |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379-22 | - | - | - | 무상 귀속 |
| 3 | 미추홀구 송의동 | 379-29 | 대 | 45.00 | 13.59 | 유인성 |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379-22 | - | - | - | 무상 귀속 |
| 4 | 미추홀구 송의동 | 379-30 | 대 | 105.30 | 14.2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5 | 미추홀구 송의동 | 383-15 | 대 | 59.50 | 34.19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외 1인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6 | 미추홀구 송의동 | 383-16 | 대 | 54.50 | 27.2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7 | 미추홀구 송의동 | 383-21 | 대 | 217.00 | 24.87 | 이한규 외 8인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23 | | | | 무상 귀속 |
| 합계 | | | | 3,317.6 | 155.86 | | | | | | |

2. 중로 2-3호선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관계내용 | 성명 | 주소 | |
| 1 | 미추홀구 송의동 | 334 | 도 | 2,794.00 | 9.07 | 인천광역시 남구 | | - | - | - | |
| 2 | 미추홀구 송의동 | 360-1 | 대 | 256.80 | 30.1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3 | 미추홀구 송의동 | 360-2 | 대 | 301.50 | 42.7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4 | 미추홀구 송의동 | 360-8 | 대 | 71.10 | 9.60 | 국 외 13인 | | - | - | - | 무상 귀속 |
| 5 | 미추홀구 송의동 | 360-9 | 대 | 148.70 | 32.6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6 | 미추홀구 송의동 | 360-10 | 대 | 272.70 | 41.70 | 김영자 외 1인 | 전남 장진군 강진읍 서성리 95 건우2차아파트 101-203 | - | - | - | 무상 귀속 |
| 7 | 미추홀구 송의동 | 360-11 | 대 | 262.80 | 37.1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8 | 미추홀구 송의동 | 360-12 | 대 | 350.10 | 50.0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9 | 미추홀구 송의동 | 360-13 | 대 | 247.60 | 34.3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합계 | | | | 4,705.3 | 287.17 | | | | | | |

3. 소로 2-1호선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관계내용 | 성명 | 주소 | |
| 1 | 미추홀구 송의동 | 334 | 도 | 2,794.00 | 333.96 | 인천광역시 남구 | | - | - | - | 무상 귀속 |
| 2 | 미추홀구 송의동 | 383-3 | 대 | 149.10 | 0.8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외 2인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3 | 미추홀구 송의동 | 383-4 | 대 | 123.00 | 1.50 | 국 외 12인 | | - | - | - | 무상 귀속 |
| 4 | 미추홀구 송의동 | 383-12 | 대 | 90.20 | 4.40 | 우옥임 외 13인 |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417 | - | - | - | 무상 귀속 |
| 5 | 미추홀구 송의동 | 383-13 | 대 | 81.30 | 4.1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외 1인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무상 귀속 |
| 6 | 미추홀구 송의동 | 383-14 | 대 | 76.40 | 4.8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무상 귀속 |
| 7 | 미추홀구 송의동 | 383-15 | 대 | 59.50 | 0.21 | 심재명 외 1인 |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417 | | | | 무상 귀속 |
| 8 | 중구 신흥동3가 | 31-63 | 대 | 180.20 | 180.20 | 김선근 외 17인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44-62 | | | | 무상 귀속 |
| 9 | 중구 신흥동3가 | 41-1 | 구 | 840.70 | 308.40 | 인천광역시 중구 | | | | | |
| 합계 | | | | 4,394.4 | 838.37 | | | | | | |

4. 소로 3-1호선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관계내용 | 성명 | 주소 | |
| 1 | 미추홀구 송의동 | 379-3 | 대 | 65.80 | 18.8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2 | 미추홀구 송의동 | 379-4 | 대 | 183.50 | 32.9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3 | 미추홀구 송의동 | 379-6 | 대 | 109.10 | 20.4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4 | 미추홀구 송의동 | 379-7 | 대 | 66.40 | 24.3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5 | 미추홀구 송의동 | 379-12 | 대 | 37.40 | 14.5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무상 귀속 |
| 6 | 미추홀구 송의동 | 379-13 | 대 | 11.20 | 2.3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무상 귀속 |
| 7 | 미추홀구 송의동 | 379-30 | 대 | 105.30 | 49.7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무상 귀속 |
| 8 | 미추홀구 송의동 | 379-33 | 대 | 3.30 | 2.7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무상 귀속 |
| 9 | 미추홀구 송의동 | 379-43 | 대 | 138.20 | 30.90 | 김기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90 | | | | 무상 귀속 |
| 10 | 미추홀구 송의동 | 379-46 | 대 | 42.70 | 9.0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무상 귀속 |
| 11 | 미추홀구 송의동 | 379-58 | 대 | 40.70 | 15.0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무상 귀속 |
| 12 | 미추홀구 송의동 | 379-59 | 대 | 72.00 | 8.00 | 이경익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85, 410동 1204호(별양동, 주공아파트) | | | | 무상 귀속 |
| 13 | 미추홀구 송의동 | 379-61 | 대 | 113.40 | 44.9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무상 귀속 |
| 14 | 미추홀구 송의동 | 379-62 | 대 | 217.80 | 84.20 | 송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무상 귀속 |
| 합계 | | | | 1,206.8 | 357.6 | | | | | | |

5. 승의소공원 조성사업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관계내용 | 성명 | 주소 | |
| 1 | 미추홀구 승의동 | 379-4 | 대 | 183.5 | 83.5 | 승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2 | 미추홀구 승의동 | 379-6 | 대 | 109.1 | 53.2 | 승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3 | 미추홀구 승의동 | 379-46 | 대 | 42.7 | 16.1 | 승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4 | 미추홀구 승의동 | 379-58 | 대 | 40.7 | 0.2 | 승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43, 2층(신흥동 3가) | - | - | - | 무상 귀속 |
| 5 | 미추홀구 승의동 | 383-59 | 대 | 72.0 | 64.0 | 이경익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85, 410동 1204호(별양동, 주공아파트) | - | - | - | 무상 귀속 |
| 합계 | | | | 448 | 217 | | | | | | |

끝.